다산학 46호 (2025.6) | 223~306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가례家禮'론

정일균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목차

1. 머리말
2. 정약용의 '가례'론의 주요내용
3. 정약용의 '가례'론에 나타난 '예의 정신'
4. 맺음말

1. 머리말[1]

주지하다시피, 정약용丁若鏞은 한평생 '삼례三禮', 즉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를 중심으로 한 유교경전에 토대를 두고, 여타 중국과 조선의 역대 예서禮書 및 예설禮說을 광범위하게 참조·인용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이고도 방대한 예학체계禮學體系를 구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예학체계는 '가례家禮'뿐만 아니라 '왕조례王朝禮'와 '방국례邦國禮'를 포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2]

한편, 정약용은 "천하天下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禮를 논하지 않았는데, 도가 이미 쇠퇴함에 예가 한 가家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자朱子가 그 예를 '『가례家禮』'라 이름붙인 까닭이다. 『가례』라는 것은 한 가家의 예이고 천하만국天下萬國의 예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예를 말하는 자는 모두가 『가례』로써 예가禮家의 조종祖宗으로 삼으니, 오늘날 비록 『가례』를 천하만국天下萬

1) 이 논문은 2024년 5월 3일, 남양주시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4년 다산학 국제학술회의(주제: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봉규 교수님(인하대 철학과)의 도타운 논평에 감사드린다.

2) 여기서 ① 정약용이 참조했던 중국과 조선의 역대 예서 및 예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 『의례』, 『예기』 등의 예경禮經에 대한 정현鄭玄[字는 康成, 127~200]의 주注와 공영달孔穎達[字는 冲遠, 574~648]가공언賈公彦[?~?]의 소疏, ㉡ 주희朱熹[晦菴, 1130~1200]의 『가례家禮』, ㉢ 서건학徐乾學[健庵, 1631~1694]의 『독례통고讀禮通考』, ㉣ 이익李瀷[星湖, 1681~1763]의 예설禮說 등이 있다. ② 한편, 정약용의 방대한 예학저술禮學著述 가운데 ㉠ '왕조례' 관련저술로는 『춘추고징春秋考徵』[1808~1833년]이 있으며, ㉡ '방국례' 관련저술로는 대표적으로 『경세유표經世遺表』[1817년], 『목민심서牧民心書』[1818~1821년], 『흠흠신서欽欽新書』[1819년]가 있고, 이외에도 『상례외편喪禮外編』에서의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 1~3』[1805년, 1819년]과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1818년] 및 『시문집詩文集』에서의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1801년, 1818년]과 「신사복제변辛巳服制辨」 및 「팔대군변八大君辨」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李霜芽(2014: 24~32, 70~95)가 참조된다.

國의 예라고 부르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3]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그는 어느덧 예제禮制가 고금古今에 따라 변하여 당시 조선사회에서도 '사족의 가례'가 '예가의 조종'이자 '천하만국의 예'로 통용되기에 이른 현실을 인정수용하는 한편, 그는 또한 고례古禮의 원칙과 조선의 시속時俗을 절충한 나름의 실용적 관점에서 일련의 방대한 독자적 가례서家禮書를 저술함으로써 특히 조선후기의 예학禮學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단순한 수용과 이해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진전시켰음은 물론이다.[4]

이처럼 정약용이 자신의 방대한 가례서를 통해 입론한 '가례'론의 주요내용을 들자면 대표적으로 ① 사족의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를 다룬 '사례四禮'론, ② '양자養子' 문제를 다룬 '입후立後'론, ③ 일종의 통례通禮에 해당하는 '제가齊家·치가治家·기가起家·보가保家'의 '거가사본居家四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약용의 '가례'론의 주요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별하는 동시에 여기서 관철되고 있는 '예禮의 정신精神'을 그 철학적 기반 및 예학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고찰해보고자 한다.

---

3) 「羅氏【炅】『家禮輯語』序」(『定本』 제2책, 408쪽). "天下有道, 非天子不議禮; 道旣衰, 禮在一家. 此朱子所以名其禮曰: '『家禮』'. 『家禮』也者, 明一家之禮, 而非天下萬國之禮也. 然今之言禮者, 率以『家禮』爲禮家之祖宗, 今雖謂之天下萬國之禮, 靡不可也."

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일균(2022: 112)이 참조된다.

2. 정약용의 '가례'론의 주요내용

1) '사례[관례·혼례·상례·제례]'론

정약용은 강진康津에서의 유배 중인 1802년[純祖 2]부터 상사喪事에 대해 본격적인 예학적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선 『예고서정禮考書頂』과 『상례사전喪禮四箋』이란 저술을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는 이후 사족 중심의 '관冠·혼婚·상喪·제祭'의 사례四禮와 관련된 일련의 방대한 가례서家禮書를 저술했던바, 이에 그의 대표적인 '가례' 관련저술을 들자면, ① 『상례사전喪禮四箋』[1803년~1811년: 「상의광喪儀匡」, 「상구정喪具訂」, 「상복상喪服商」, 「상기별喪期別」로 구성되어 있음], ② 『상례외편喪禮外編』[1803년~1821년: 『단궁잠오檀弓箴誤』[1803년], 『조전고弔奠考』[1803년], 『고례영언古禮零言』[1804년], 『예고서정禮考書頂』[1811년~1821년],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 1~3』[1805년, 1819년],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1818년]로 구성되어 있음], ③ 『사례가식四禮家式』[1808년~1817년: 『상의절요喪儀節要』[1817년], 『제례고정祭禮考定』[1808년], 『가례작의嘉禮酌儀』[1810년]로 구성되어 있음], ④ 『예의문답禮疑問答』[「승암예문僧菴禮問」, 「서독예문書牘禮問」, 「손암예의巽菴禮疑」, 「군상폐사제론君喪廢私祭論 1~2」,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答」으로 구성되어 있음], ⑤ 『풍수집의風水集議』[1825년: 본문의 말미에 「사암풍수론俟菴風水論」이 부기되어 있음]가 있으며, ⑥ 이외에도 『시문집詩文集』에서의 「입후론立後論 1~3」[1801(?)~1802년]과 「풍수론風水論 1~5」 및 「갑을론甲乙論 1~2」[1817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정약용의 『사례가식』[5]을 중심으로 그가 독자적으로 정립한바 '관·혼·상·제'의 사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일별해 보기로 하자.

① '관례'론

정약용은 『가례작의嘉禮酌儀』의 「관례冠禮」편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관례'론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고례古禮의 지나친 번잡함과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이익李瀷[星湖, 1681~1763]의 『예식禮式』이 지닌 지나친 간략함이란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문제의식[6]서 『의례儀禮』와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당시 조선의 시속時俗을 참작하여 저술한 관례서冠禮書로서, 또한 이를 저술한 계기로는 "내가 다산茶山에 있을 때, 마침 주인[尹慱: 필자 주]의 아들[尹奎魯: 필자 주]이 관례를 행하게 되었기에 삼가 『의례』와 『가례』를 가져다가 고아한 풍속을 참작하여 '세 번 관冠을 씌우는 의례[三加禮]'의 의식절차를 다음과 같이 갖추었다."[7]라고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정약용은 '관례'의 의식절차로서 ① '고묘告廟[주인主人이 관례

---

5) 정약용의 『사례가식』이란 저술의 성립과정과 구성내용 및 예학적 의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조성을(2005: 120~124), 박종천(2012: 5~18) 및 전성건(2015: 13~35)이 참조된다.

6)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다만 옛날의 관례冠禮는 의식절차가 복잡하고 번다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준용遵用하기가 쉽지 않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비록 옛날에 비해 간소화하고 생략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冠·복服의 제도가 달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를 병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성호선생星湖先生께서 지으신 『산절관의刪節冠儀』가 있는데 또한 너무 간소화시킨 듯하다.(但古之冠禮, 繁縟備文, 今人未易遵用. 『朱子家禮』, 雖比古簡省, 然冠服異制, 人猶病之, 我星湖先生有『刪節冠儀』, 又恐太簡.)"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28쪽).

7)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28쪽). "余在茶山, 適主人之子加冠, 謹取『儀禮』·『家禮』, 參酌雅俗, 苟備三加之文如左, …… ."

冠禮를 거행할 것을 사당에 고함', ② '계빈戒賓[주인이 빈賓에게 관례의 날짜를 알림]', ③ '숙빈宿賓[빈에게 와주기를 거듭 청함]'〈이상 관례일 전〉, ④ '진기복陳器服[당일 아침에 대야[洗]의복[服]빗[櫛]관冠을 진설함]', ⑤ '진초구陳醮具[초례醮禮의 도구를 진설함]', ⑥ '영빈迎賓·즉위卽位[주인이 빈을 맞이하고, 주인, 빈, 찬자贊者, 장관자將冠者가 각자의 자리에 나아감]' ⑦ '관례冠禮 예비의절豫備儀節[빈, 찬자, 장관자가 각자 관례의 시행을 준비함]', ⑧ '시가례始加禮[빈이 첫 번째 관冠을 씌워줌]', ⑨ '재가례再加禮[빈이 두 번째 관을 씌워줌]', ⑩ '삼가례三加禮[빈이 세 번째 관을 씌워줌]', ⑪ '초례醮禮[빈이 관자冠者에게 초례醮禮를 베풂]', ⑫ '관자현부冠者見父[관자가 부父와 제부諸父 및 형제兄弟에게 알현함]', ⑬ '빈자관자賓字冠者[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줌]', ⑭ '예빈醴賓[주인이 빈에게 예례醴禮를 행함]', ⑮ '진폐·송빈進幣·送賓[주인이 빈에게 폐백幣帛을 올리고, 빈을 전송함]', ⑯ '관자현모冠者見母[관자가 어머니와 고모, 손윗누이를 알현함]', ⑰ '관자현묘冠者見廟[관자가 주인을 따라 사당에 알현함]', ⑱ '관자편배부형종족·향선생冠者徧拜父兄宗族·鄕先生[관자는 부형父兄의 종족宗族 및 향선생鄕先生에게 두루 절함]'〈이상 관례 당일〉을 제시하고 있다.[8)]

---

8) 『의례儀禮』의 「사관례士冠禮」편에서의 의식절차로는 ① 서일筮日[관례일을 점침], ② 계빈戒賓[주인主人이 빈賓에게 관례일을 알림], ③ 서빈筮賓[빈을 점침]과 숙빈·숙찬관자宿賓·宿贊冠者[주인이 빈과 찬자贊者에게 거듭 청함], ④ 위기爲期[관례 시간을 정함]〈이상 관례일 전〉, ⑤ 진기복陳器服[의복과 기물을 진설함], ⑥ 즉위卽位[자리에 나아감], ⑦ 영빈迎賓[주인이 빈을 맞이함], ⑧ 시가始加[빈이 첫 번째 관冠을 씌워줌], ⑨ 재가再加[빈이 두 번째 관을 씌워줌], ⑩ 삼가三加[빈이 세 번째 관을 씌워줌] ⑪ 초관자醮冠者[빈이 관자冠者에게 초례醮禮를 베풂], ⑫ 현모見母[관자가 어머니를 알현함], ⑬ 빈자관자賓字冠者[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줌], ⑭ 빈출취차賓出就次[빈이 묘문廟門 밖의 차次에 나아감], ⑮ 현형제·고자見兄弟·姑姊[관자가 형제, 고모, 손윗누이를 알현함], ⑯ 현군·경대부·향선생見君·卿大夫·鄕先生[관자가 군주君主, 경대부卿大夫, 향선생鄕先生을 알현함], ⑰ 예빈醴賓[주인이 빈에게 예례醴禮를 베풂], ⑱ 송빈·귀빈조送賓·歸賓俎[주인이 빈을 전송하고 조俎를 보내줌]〈이

둘째, 정약용이 이처럼 제시한바 '관례'의 전체 의식절차 가운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는 '세 번 관을 씌우는 의례'로서의 '시가례始加禮'·'재가례再加禮'·'삼가례三加禮'와 함께 '초례醮禮'와 '빈자관자賓字冠者'를 들 수 있는바, 왜냐하면 바로 이 다섯 가지 의식절차가 곧 관례가 본디 지향했던 '예禮의 정신精神'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 '시가례'는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원복元服[남자가 成年이 되어 처음으로 입는 어른의 衣冠: 필자 주]을 입히니, 너의 어린 생각을 버리고 너의 어른스러운 뜻을 따라 행하여 장수하고 상서로우며 큰 복을 받"[9]을 것을, ② '재가례'는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의 옷을 거듭 입히니, 너의 몸가짐을 공경히 하고 너의 덕을 삼가 오래도록 장수하며

상 관례 당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관례冠禮」편에서의 의식절차로는 ① 고사당告祠堂[주인主人이 관례冠禮의 거행을 사당祠堂에 아룀], ② 계빈戒賓[주인이 빈賓을 청함], ③ 숙빈宿賓[주인이 빈에게 와주기를 거듭 청함], ④ 진설陳設[대야[盥]와 수건[帨] 및 역막帟幕 등을 청사廳事에 진설하고, 청사에 양 계단이 없으면 흰 흙으로 금을 그어 나눔]〈이상 관례일 전〉, ⑤ 진관복陳冠服[관冠과 의복을 진설함], ⑥ 서립序立[주인 이하는 성복盛服하고 자리에 나아가 차례로 섬], ⑦ 영빈·승당迎賓·升堂[주인이 빈을 맞이하여 당堂에 오름], ⑧ 가관·건加冠·巾[빈이 관冠과 건巾을 씌움], ⑨ 재가모자再加帽子[빈이 두 번째 모자帽子를 씌움], ⑩ 삼가복두三加幞頭[빈이 세 번째 복두幞頭를 씌움], ⑪ 초관자醮冠者[빈이 관자冠者에게 초례醮禮를 베풂], ⑫ 빈자관자賓字冠者[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줌], ⑬ 빈출취차賓出就次[빈이 나와서 차次에 나아감], ⑭ 관자현사당冠者見祠堂[관자가 주인主人을 따라 사당祠堂에 알현함], ⑮ 관자현존장冠者見尊長[관자가 부모父母, 여러 숙부叔父, 형兄, 숙모叔母, 고모姑母, 누이[姊], 형수[嫂] 및 동거하는 웃어른 등 집안의 웃어른을 두루 알현함], ⑯ 예빈禮賓[주인이 빈賓을 대접하고 폐백幣帛을 드림], ⑰ 관자현향선생·부지집우冠者見鄕先生·父之執友[관자가 향선생鄕先生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알현함]〈이상 관례 당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자가례』의 「관례」편에는 '여자의 성인식成人式'에 해당하는 '계례笄禮'가 별도로 부기되어 있다.

9)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32쪽). "[行始加禮. ○賓執冠, 乃祝,【句】辭曰: '令月吉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介爾景福.' ○乃冠,【加于首】興, 復位.【位在西】……]"

큰 복을 길이 누"[10]릴 것을, ③ '삼가례'는 "좋은 해【정正은 선善이다】 좋은 달에 너의 옷을 다 입혔으니, 형제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11]을 것을, ④ '초례'는 "맛있는 술은 이미 맑고,【예주醴酒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술은 아주 진하고[甘醴唯厚]'라고 말한다】 좋은 안주는 향기로우니, 절하고 받아 제사 지내어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도록 잊지 말"[12] 것을, ⑤ '빈자관자'는 "예의禮儀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에게 밝게 자字를 알려주노라. 이에 자字가 매우 아름다워 준수한 선비[髦士]에게 마땅한 바요 복福에도 마땅하니 받아서 길이 보존"[13]할 것을 각각 천명했던바, 이로써 상기의 의식절차는 고례古禮로부터 연원한 '유교적儒敎的 인도주의人道主義'의 사상을 반복적으로 재확인·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또한 정약용이 『의례』와 함께 『주자가례』를 계승하면서 공유했던 예학적 특징이기도 하다.

② '혼례'론

정약용은 『가례작의嘉禮酌儀』의 「혼례婚禮」편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

10)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33쪽). "[行再加禮. ○ …… 賓取冠, 執如初,【賓先取緇冠, 去之】 乃祝,【句】 辭曰: '吉月令辰, 乃申爾服, 敬爾威儀, 淑愼爾德, 眉壽萬年, 永受胡福.' ○乃冠. 興, 復位如初. ……]"

11)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33쪽). "[行三加禮. ○ …… 賓取紗帽, 執如初,【賓先取冠, 去之】 乃祝,【句】 辭曰: '以歲之正,【正, 善也】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耇無疆, 受天之慶.' ○冠者興, 賓揖之. ……]"

12)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34쪽). "[乃醮. ○ …… 賓受觶, 乃祝.【句】 辭曰: '旨酒旣淸,【用醴, 則曰: 「甘醴唯厚.」】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乃授觶. 冠者拜, 受觶.【旣拜而受之】 ……]"

13) 『嘉禮酌儀: 「冠禮」』(『定本』 제22책, 235쪽). "[乃字. ○ …… 賓字之. ○辭曰: '禮儀旣備, 令月吉日, 昭告爾字. 爰字孔嘉, 髦士攸宜, 宜之于假, 永受保之' ○曰: '某甫.' ……]"

'혼례'론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그가 당시 조선의 혼례제도가 유교적 '친영親迎'의 정신과 의식절차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14]에서 『의례』와 『주자가례』를 참작하여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혼례풍속을 고례古禮의 정신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한 혼례서婚禮書로서, 또한 이를 저술한 직접적 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京城]의 귀족貴族들은 하루 만에 사위가 전안奠雁의 예禮를 행하고 신부 역시 폐백幣帛의 예禮를 행하고는 이를 '당일신부當日新婦'라고 부르니, 이것이 어찌 친영親迎이 아니겠는가? 다만 합근合巹의 예禮를 여자 집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만약 여기서 약간만 바로잡는다면 아주 훌륭한 고례古禮가 될 것이다."[15]라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정약용은 '혼례'의 의식절차로서 ① '납채納采[남자 집에서 사자使者인 빈賓을 통해 신랑新郎의 경첩庚帖[사주단자四柱單子: 신랑의 생년生年·월月·일日을 기록한 것]을 전달하고, 여자 집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답서答書를 보냄', ② '문명問名[같은 날 뒤이어 남자 집에서 빈을 통해 신부新婦의 생년·월·일을 묻는 짧은 편지를 전달하면, 여자 집에서

14)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혼례婚禮에서의 친영親迎이란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혼례가 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서漢書』나 『위지魏志』 등의 역사서에서 모두 이를 기롱譏弄하고 폄하하고 있어 이를 읽고 있자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근세近世의 선배先輩들이 (당시 조선의 잘못된: 필자 주) 풍속에 따라 혼례를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양가兩家의 의식절차가 서로 달라 하나로 귀결시키기가 쉽지 않음에 구차하게 옛 인습因習을 따름은 용납할 만하고 혹 괴이하게 여길 것까지야 없겠지만, 기필코 입언立言하여 후세에 전하면서 법도法度로 삼도록 함은 크게 불가하다.(婚禮親迎, '陽往陰來'之意也. 吾東之俗, 婚禮成於女氏, 漢·魏諸史, 竝有譏貶, 讀之可愧. 近世先輩, 因俗爲禮, 著之爲書. 余謂兩家儀乖, 未易歸一, 則苟且因循, 容或無怪, 其必立言, 垂後使爲成法, 大不可也.)" 『嘉禮酌儀: 「婚禮」』(『定本』 제22책, 237쪽).

15) 『嘉禮酌儀: 「婚禮」』(『定本』 제22책, 237쪽). "今京城貴族, 一日之內, 壻旣委禽, 婦亦薦贄, 謂之'當日新婦', 斯豈非親迎哉? 特合巹在女家耳. 若於是稍加釐正, 嶄嶄乎古禮也."

는 신부의 생년·월·일을 적은 경첩을 빈에게 전달함'과 '예빈醴賓[여자 집 주인이 빈에게 예례醴禮를 행함]', ③ '납길納吉[남자 집에서 '길吉하다'는 의견을 편지로 전달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답서를 보냄. 이때 남자 집에서 의양衣樣[신랑의 의복의 치수를 적은 문서]도 함께 전달함]', ④ '청기請期[남자 집에서 혼인 날자를 정해 편지로 여자 집에 알리고 허락을 청함]', ⑤ '납징納徵[남자 집에서 보낸 성혼成婚의 예물을 여자 집에서 받아들임]'〈이상 혼례일 전〉, ⑥ '설연정당設筵正堂[신부 집에서 정당正堂[내당內堂]에 자리[筵]를 진설하여 전안례奠鴈禮에 대비하고 중문中門 밖에 차次를 설치함]', ⑦ '진설기찬陳設器饌[신랑 집에서 정당에 음식과 자리를 진설하여 공뢰례共牢禮와 합근례合巹禮에 대비함]', ⑧ '초자醮子[포시晡時[오후 3시~5시]에 신랑의 아버지가 정당에서 아들에게 초례醮禮를 행함]'와 '친영親迎[신랑이 성복盛服한 다음 말을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정당에서 전안례奠鴈禮를 행함. 신랑은 신부를 가마[轎]에 태워 다시 신랑 집으로 인도하여 돌아옴]', ⑨ '서부동뢰婿婦同牢[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면 정당에서 동뢰례同牢禮[같은 종류의 음식을 함께 먹는 의례]와 합근례合巹禮[근배巹杯로 함께 술을 맛보는 의례]를 행함]'〈이상 혼례 당일〉, ⑩ '부현구고婦見舅姑[다음날 날이 밝으면 신부는 성복盛服하고 정당에서 시부모媳父母를 알현하고, 뒤이어 여러 시숙부媳叔父와 시숙모媳叔母 및 여러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두루 인사함]', ⑪ '예부醴婦[시부모가 신부에게 예례醴禮를 베풂]', ⑫ '관궤盥饋[신부가 손을 씻고 시부모에게 음식과 술을 올림]'와 '준餕[관궤의 예가 끝난 뒤 신부가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음식을 먹음]', ⑬ '향부饗婦[시부모가 신부에게 향례饗禮를 베풂]'와 '귀조歸俎[시부모가 신부 집에 조俎를 보냄]' 및 '향부가래자饗婦家來者[시부모가 신부를 호종護從해 온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각각 연향宴饗을 베풂]'〈이상 혼례

익일〉, ⑭ '현묘見廟[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혼례를 치른 뒤 사흘째 되는 날 신부가 시부모의 사당[舅姑廟]을 알현함]', ⑮ '현조묘見祖廟[시부모가 살아계시더라도 혼례를 치른 뒤 사흘째 되는 날 신부가 조상의 사당[祖廟]을 알현함]' 〈이상 혼례 뒤 삼일〉를 제시하고 있다.[16)]

둘째, 정약용은 이상과 같은 '혼례'의 의식절차를 정립함에 있어 자신

16) 『의례儀禮』의 「사혼례士昏禮」편에서의 의식절차로는 ① 납채納采[남자 집에서 먼저 중매자[媒氏]를 보내 구혼求昏의 뜻을 전하여 여자 집에서 허락하면[議昏] 이에 남자 집에서 사자使者인 빈賓을 통해 채택采擇의 예를 보냄], ② 문명問名[남자 집의 사자인 빈이 신부新婦의 성씨姓氏를 물음], ③ 예빈醴賓[빈에게 예례醴禮를 베풂], ④ 납길納吉[남자 집에서 점쳐 길吉한 결과를 빈이 고하면 여자 집에서 받아들임], ⑤ 납징納徵[성혼成昏의 예물을 여자 집에서 받아들임], ⑥ 청기請期[빈이 혼인날을 확정해 주기를 청함]〈이상 혼례일 전〉, ⑦ 진기찬陳器饌[신랑新郎 집에서 기물器物과 음식[饌]을 진설함], ⑧ 친영親迎[신랑이 신부新婦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옴], ⑨ 부지동뢰婦至同牢[신부가 신랑의 집에 와서 동뢰同牢[같은 종류의 희생犧牲을 함께 먹음]의 예禮를 이룸]〈이상 혼례 당일〉, ⑩ 부현구고婦見舅姑[다음날 날이 밝으면 신부가 시부모媳父母를 알현함] ⑪ 찬예부贊醴婦[찬자贊者가 시부모를 대신하여 신부에게 예례醴禮를 베풂]와 귀포歸脯[신부가 신부 집에 포를 보냄], ⑫ 부궤婦饋[신부가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식사를 올림]와 준餕[신부가 시부모가 남긴 대궁을 먹음], ⑬ 향부饗婦[시부모가 신부에게 연향宴饗을 베풂]와 귀조歸俎[시부모가 신부 집에 조俎를 보냄], ⑭ 향송자饗送者[시부모가 신부를 호종護從해 온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각각 연향을 베풂]〈이상 혼례 익일〉, ⑮ 삼월전채三月奠菜[시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혼례를 치른 뒤 석 달이 되면 신부가 네묘禰廟를 알현하고 전채례奠菜禮를 행함]〈이상 혼례 뒤 석 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昏禮」편에서의 의식절차로는 ① 의혼議昏[먼저 중매자[媒氏]가 남자 집과 여자 집을 왕래하며 혼사昏事를 의논함], ② 납채納采[남자 집에서 사자使者를 통해 편지로 채택采擇의 예를 전달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임], ③ 납폐納幣[남자 집에서 사자를 통해 폐백幣帛과 편지를 보내면 여자 집에서 폐백을 받아들이고 답장을 보냄]〈이상 혼례일 전〉, ④ 친영親迎[혼례일 초저녁에 신랑新郎이 성복盛服한 다음 말을 타고 신부新婦 집으로 가서 대청[廳事]에서 전안례奠鴈禮를 행함. 신랑은 신부를 수레에 태워 다시 신랑 집으로 인도하여 돌아와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交拜禮를 행함]〈이상 혼례 당일〉, ⑤ 부현구고婦見舅姑[다음날 새벽에 신부가 시부모媳父母와 집안의 여러 어른들을 알현함. 이어 신부는 시부모에게 식사를 올리고, 시부모는 신부를 위해 연향宴饗을 베풂]〈이상 혼례 익일〉, ⑥ 묘현廟見[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신부가 사당[廟]을 알현함]〈이상 혼례 뒤 사흘째 되는 날〉, ⑦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이튿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와 신부 집안의 여러 친족을 알현함]〈이상 혼례 뒤 나흘째 되는 날〉로 구성되어 있다.

만의 독자적인 예학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가례家禮의 제정과 관련하여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의 절충折衷'이란 기본원칙으로 일관되게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어디까지나 '고례古禮의 정신精神'을 일차적으로 존중하는 입장 또한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주자가례』에서의 혼례가 지나치게 '간편簡便함'을 좇아 『의례』에 나오는 '문명問名'과 '납길納吉' 및 '청기請期'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한 '납징納徵' 대신 '납폐納幣'의 절차를 사용했던 점[17]을 비판·거부하는 가운데, 비록 명목상이나마 그는 자신만의 의식절차를 구성함에 있어 『의례』에서의 사례를 충실히 계승·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셋째, 정약용은 혼례의 정립과 관련하여 특히 '유교적 친영제도親迎制度의 확립'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즉, ① 그는 기본적으로 "혼례婚禮에서의 친영親迎이란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는 뜻"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② 자신이 구상한바 혼례에서의 '광의의 친영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즉 '청기請期', '설연정당設筵正堂', '진설기찬陳設器饌', '초자醮子'와 '친영親迎' 및 '서부동뢰婿婦同牢'의 의식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당시 조선의 혼례풍속 가운데 "본래 예서禮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 의리義理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무릇 비루하고 조악한 풍속은 모두 깨끗이 없애서 인도人道의 시작을 중시해야 할 것"[18]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로서 '옥각동자玉刻童子의 사용', '큰 자리에서 함께 교배交拜하는 풍속', '자

17) 『家禮』, 卷3(「昏禮」), p. 4a "古禮有問名·納吉, 今不能盡用, 止用納采·納幣, 以從簡便."

18) 『嘉禮酌儀: 「婚禮」』(『定本』 제22책, 251~252쪽). "[凡係鄙俚之俗, 竝宜滌除, 以重人道之始.] …… 然本非見於『禮』者, …… 不合於義, 故廢之."

촉刺燭의 사용', '징씨徵氏의 관례', '신랑이 대문에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 친복親僕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바꿔 잡게 하는 관습', '해홍사解紅絲의 관례' 및 '중당中堂에서 예禮를 행하는 관습'을 거론하고 있다.

③ '상례'론

정약용은 『상의절요喪儀節要』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상례喪禮'론의 일단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저서는 그가 자신의 집안에서 상례喪禮를 치를 때 실제로 사용할 목적에서 편찬했던 실용적 예서로서, 『상례사전喪禮四箋』[19]의 「상의광喪儀匡」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요약정리한 저술이다. 또한 그는 이를 저술한 직접적 계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상례喪禮를 전석箋釋한 지 이미 몇 해가 되었다. 널리 고증하였으나 간략하지 못함에, 보는 자들이 이를 병통으로 여겨 요약본이 있기를 원하였다. 겸양謙讓만 하고 감히 이를 시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신분身分의 귀천貴賤이 다르고, 경제력經濟力이 다르며, 고금古今의 마땅함에 차이가 있고, 중국中國과 조선朝鮮의 풍속이 다르며, 성향性向과 기호嗜好가 각자 치우치고, 지식知識과 취향趣向이 이에 따라 달라져, 이 모두를 참작參酌하고 회통會通하는 일이

19) 『상례사전』은 정약용이 사상례士喪禮와 관련된 예경禮經과 역대 예제禮制 및 제유諸儒의 예설禮說을 광범위하게 상고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상의喪儀', '상구喪具', '상복喪服', '상기喪期'의 주제별로 나누어 편찬함으로써 '상례학喪禮學'을 집대성한 예서禮書이다. 여기서 ① 「상의광喪儀匡」은 『의례儀禮』의 「사상례士喪禮」, 「기석례旣夕禮」, 「사우례士虞禮」편 등에 기록된 상례喪禮의 과정과 의식을 다루고 있는 저술이다. ㉡ 「상구정喪具訂」은 상례와 관련된 의금衣衾과 관곽棺槨의 상구제도喪具制度를 다루고 있는 저술이다. ㉢ 「상복상喪服商」은 상례와 관련된 최관衰冠과 질대絰帶의 상복喪服과 그 부속 기물을 다루고 있는 저술이다. ㉣ 「상기별喪期別」은 상喪을 당했을 때 입는 오복五服과 상복喪服을 입는 대상을 다루고 있는 저술이다.

정말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경嘉慶 을해년乙亥年[1815年, 純祖 15: 필자 주] 겨울에 맏아들 학가學稼[丁學淵: 필자 주]가 병시중을 들려고 와서 거듭 청하였다. 나는 '동시대에 공개함은 내가 감히 할 수 없지만, 자손子孫을 훈계訓戒하기 위함이라면 또한 어찌 사양하겠는가?'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한 집안의 용도에 대비하였다."[20]라고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정약용은 '상례'의 의식절차로서 ① '시졸始卒[유질有疾, 질혁疾革, 촉광屬纊[솜을 코 위에 대고 사망을 확인함], 수체收體, 남녀개복男女改服, 입상주立喪主, 피발披髮[상투를 풀어 머리카락을 좌우로 늘어뜨림]·급상임扱上衽[상의의 옷깃을 허리띠 안쪽으로 넣음], 곡哭, 설상제設牀第, 천시遷尸, 복復, 설전設奠, 유당帷堂, 정곡위正哭位, 입호상立護喪·사서司書·사화司貨, 고부告訃, 치관治棺, 설명設銘', ② '습함襲含[굴감掘坎, 진습사陳襲事[습襲에 필요한 의복衣服을 진설함], 진함구陳含具[반함飯含에 쓸 도구를 진설함], 목沐·즐櫛·괄髺·진振·욕浴·진振·전剪, 설명의設明衣, 습襲, 단袒, 함含, 진瑱·멱幎·엄掩·구屨·대帶·악수幄手·안상安牀·금복衾覆, 치명중置銘重, 곡哭, 설전設奠, 요정燎庭]' 〈이상 시졸 당일〉, ③ '소렴小斂[진렴사陳斂事[소렴에 필요한 물건들을 진설함], 진전사陳奠事[전奠에 사용할 물건들을 진설함, 특돈일정特豚一鼎], 진질陳絰·대帶, 포석鋪席·포교鋪絞·포금鋪衾, 곡哭·용踊, 천시遷尸·금衾·교絞, 빙시곡憑尸哭, 단袒·괄발括髮·문免·좌髽·대帶, 봉시奉尸, 즉위卽位·습襲·질絰·배빈拜賓, 전奠·곡哭·성용成踊, 대곡代哭, 요정燎庭]' 〈이상 시졸 명일〉, ④ '대렴大斂[진렴사陳斂事, 승관升棺, 진전사陳奠事[특돈삼정特豚三鼎], 봉시교奉尸絞, 곡哭·용

20) 『喪儀節要』 卷1(『定本』 제22책, 50쪽). "余箋釋喪禮, 旣有年矣. 博而不約, 覽者病之, 願有節要文字. 顧謙讓不敢爲此者, 誠以貴賤異位, 富貧殊力, 古今異宜, 華東殊俗, 性好各偏, 識趣隨別, 參酌會通, 其事實難也. 嘉慶乙亥冬, 學稼來養疾, 亟有請焉. 余曰: '公諸一世, 非余所敢, 戒子訓孫, 又何辭焉?', 遂錄如左, 以備一家之用."

踊, 봉시납관奉尸納棺, 단袒·협관곡俠棺哭·개蓋·임衽, 습襲·전奠·성용成踊, 철유徹帷·조의려造倚廬]' 〈이상 시졸 후 삼일〉, ⑤ '성복成服[진최陳衰·장杖[상복喪服과 상장喪杖을 진설함], 조곡朝哭, 상裳·최衰·관冠·질대絰帶·교수絞垂[요질腰絰의 널어뜨린 마麻를 묶음], 전奠, 취려就廬·장杖·곡哭·배빈拜賓]' 〈이상 시졸 후 사일〉, ⑥ '성빈成殯[굴사감掘肆坎, 조곡朝哭, 계호啓戶, 고유告由, 곡哭·용踊, 봉구안우감奉柩安于坎, 석席·도塗·옥屋, 설의設椅·탁桌, 치명중置銘重, 곡哭, 반위反位, 궤饋, 곡우여차哭于廬次, 곡주야哭晝夜, 삭일은전朔日殷奠, 중월천례仲月薦禮]' 〈이상 시졸 후 오일〉, ⑦ '계빈啓殯[영조역營兆域, 정일기定日期[유일柔日], 천광穿壙·축참築墋, 고계빈告啓殯, 곡哭, 산대수散帶垂·좌髽·단袒, 곡哭·용踊, 봉구예묘奉柩詣廟, 습襲·전奠]', ⑧ '조전祖奠[납여納輿, 취위就位·단袒, 봉구하당奉柩下堂, 재載·속束, 곡哭·용踊, 선거旋車·건명建銘, 습襲·전奠, 요정燎庭, 대곡代哭]' 〈이상 성빈 후 십일에서 발인 일일 전〉, ⑨ '발인發引[진전구陳奠具, 봉구거奉柩車, 개蓋·유帷·식飾·삽翣, 곡哭·용踊·습襲·전奠, 구거행柩車行, 곡보종구哭步從柩, 단袒·습襲]', ⑩ '폄窆·반곡反哭[구지광柩至壙, 단袒·지곡止哭, 폄窆·참墋·축築·탄炭·토土·축築, 습襲, 영감盈坎, 전奠, 입주立主, 매명埋銘, 반곡反哭, 단袒·곡哭, 적빈궁適殯宮, 곡진애哭盡哀, 습襲, 초우제初虞祭]' 〈이상 발인 당일〉, ⑪ '우제虞祭[포석布席·설궤設几·진제사陳祭事, 취위就位·곡哭·재배再拜, 천변두薦籩豆·천궤薦簋·천형薦鉶, 천조유식薦俎侑食, 초헌初獻·아헌亞獻·삼헌三獻, 진수進水, 곡哭, 고리성告利成, 재배再拜, 철찬徹饌·합유호闔牖戶·출出]', ⑫ '졸곡卒哭·부祔[장례를 치른 뒤 1일을 격하여 유일柔日에 재우제再虞祭를, 2일을 격하여 강일剛日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내며, 예는 모두 초우제와 같음. 삼우제가 곧 졸곡제卒哭祭임. 삼우제를 지낸 다음 날에 부제祔祭를 지내며, 예는 우제와 같음. 부제에는 천수례薦羞禮를 행함]', ⑬ '소상小祥[초상으로부터 만 일 년이 되면 연복練服을 입

으며, 행사行事는 모두 우제와 같음. 천수례와 치작례致爵禮를 행함. 조석곡朝夕哭을 그침]', ⑭ '대상大祥[소상제를 지낸 뒤 다시 만 일 년이 되면 호관縞冠·소복素服을 입으며, 행사는 모두 소상과 같음. 천수례와 여수례旅酬禮를 행함. 조천祧遷할 신주를 묘소에 묻고, 이어 새 신주를 받들어 사당에 들임]', ⑮ '담제禫祭[대상제를 지내고 한 달을 걸러 섬관纖冠을 쓰며, 행사는 모두 대상과 같음]'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21)]

---

21) 『의례儀禮』에서는 사士의 상장례喪葬禮의 의식절차에 대하여 「상복喪服」[권卷11], 「사상례士喪禮」[권12], 「기석旣夕」[권13], 「사우례士虞禮」[권14]편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① 「상복」편에서는 '오복五服'으로서 참최斬衰[삼년三年], 자최齊衰[삼년三年, 장기杖期, 부장기不杖期, 삼월三月], 대공大功[상殤, 구월九月], 세최緦衰[칠월七月], 소공小功[상殤, 오월五月], 시마緦麻[삼월三月]가, ② 「사상례」편에서는 ㉠ 시사始死[질병疾病, 시사始死, 초혼招魂, 설치楔齒·철족綴足·설전設奠·유당帷堂, 부군赴君·부고赴告, 취곡위就哭位, 수襚, 위명爲銘, 굴감掘坎·위역爲垼, 목욕沐浴, 반함飯含, 습시襲尸, 치중置重·치명置銘〈이상 시사 당일〉, ㉡ 소렴小斂[각종 의물衣物의 진열, 소렴小斂, 빙시憑尸, 괄발括髮, 단袒, 문免, 좌髽, 소렴전小斂奠, 대곡代哭, 수襚〈이상 시사 명일〉, ㉢ 대렴大斂[각종 의물衣物과 전물奠物의 진설 및 빈구殯具의 준비, 철소렴전徹小斂奠, 대렴大斂, 빙시憑尸, 개蓋·빈殯·용踊, 대렴전大斂奠, 송빈送賓·송형제送兄弟, 취상차就喪次〈이상 시사 후 삼일〉, ㉣ 성복成服〈이상 시사 후 사일〉, ㉤ 조석곡朝夕哭·조석전朝夕奠, 삭망전朔望奠, 천신薦新, ㉥ 서택筮宅, 시곽視椁, 복일卜日〈이상 시사 후 사일 이후〉이, ③ 「기석」편에서는 ㉠ 계빈啓殯[천조묘遷祖廟, 거마車馬 진열, 천조전遷祖奠], ㉡ 장전葬前[관載棺·식구飾柩, 장구葬具 및 명기明器 진열, 조祖[구거柩車를 돌려놓음], 조전祖奠, 봉賵·전奠·부賻·증贈]〈이상 장례 하루 전〉, ㉢ 장葬[장전葬奠, 명기明器와 거마車馬 출행, 봉서賵書와 견책遣策 낭독, 구거柩車 출행, 군증폐君贈幣, 하관下棺, 반곡反哭, 초우제初虞祭]〈이상 장례 당일〉, ㉣ 재우제再虞祭, ㉤ 삼우제三虞祭, ㉥ 졸곡제卒哭祭, ㉦ 부제祔祭가, ④ 「사우례」편에서는 ㉠ 삼우제, ㉡ 졸곡제, ㉢ 부제, ㉣ 소상小祥, ㉤ 대상大祥, ㉥ 담제禫祭와 관련된 내용이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다.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상례喪禮」편에서의 의식절차로는 ① 초종初終[질병천거疾病遷居, 절絶·곡哭, 복復, 입상주立喪主·주부主婦·호상護喪·사서司書·사화司貨, 역복불식易服不食, 치관治棺, 부고訃告], ② 목욕沐浴[시신尸身을 목욕시킴], 습襲[시신을 염습斂襲함], 전奠[전제奠祭를 올림], 위위爲位[곡哭하는 자리를 만듦], 반함飯含[시신의 입안에 쌀과 동전을 물림], ③ 영좌靈座[영좌를 설치함], 혼백魂帛[혼백을 만듦], 명정銘旌[명정을 만들어 세워놓음]〈이상 초종 당일〉, ④ 소렴小斂[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 전奠, 대곡代哭]〈이상 초종 명일〉, ⑤ 대렴大斂[진대렴의금陳大斂衣衾, 설전구設奠具, 거관입擧棺入, 대렴大斂[시신을 관 안에 안치함], 설영상設靈牀, 설전設奠, 귀상차歸喪次, 지대곡止

둘째, 정약용은 이상과 같은 '상례'의 의식절차를 정립함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학적 원칙을 견지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상례를 위시한 가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의 절충折衷'이란 기본원칙으로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학적 관점, 특히 '합리성[合理]', '간편함[便]' 및 '소박함[澹素]'의 지향이라는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또한 그는 상례의 구체적 절차를 입론·제정함에 있어서

代哭]〈이상 초종 후 삼일〉, ⑥ 성복成服[복오복服五服[참최삼년斬衰三年, 자최삼년齊衰三年, 대공구월大功九月, 소공오월小功五月, 시마삼월緦麻三月], 취위就位·조곡朝哭·상조相弔, 시식죽始食粥]〈초종 후 사일〉, ⑦ 조석곡전朝夕哭奠[아침저녁으로 곡哭하며 전제奠祭를 드림], 상식上食[식사 때 음식을 올림], ⑧ 조弔[조상弔喪함], 전奠[전제奠祭를 드림], 부賻[부의賻儀함], ⑨ 문상聞喪[멀리서 상喪을 듣고 의례儀禮를 행함], 분상奔喪[멀리서 상喪을 듣고 장사葬事 지내러 급히 집으로 돌아감], ⑩ 치장治葬[장사 지낼 터를 조성함]‖택지擇地, 택일擇日, 개영역開塋域, 사후토祠后土, 천광穿壙, 작회격作灰隔, 각지석刻誌石, 조명기造明器·하장下帳·포苞·소箵·앵罌·대여大轝·삽翣, 작주作主], ⑪ 천구遷柩[영구靈柩를 옮김], 조조朝祖[조상을 뵘], 전부奠賻[술을 올리고 부의賻儀함], 진기陳器[제기祭器를 진설함], 조전祖奠[조전을 차리고 술을 올림]〈발인發引 하루 전〉, ⑫ 견전遣奠[상여를 떠나보내는 제사를 드림]‖천구취여遷柩就轝, 축봉혼백祝奉魂帛·승거분향升車焚香], ⑬ 발인發引[발인함]‖영구靈柩가 떠남. 주인主人 이하 남녀男女는 곡哭을 하며 걸어서 따라감], ⑭ 급묘及墓[영구가 묘소에 도착함], 하관下棺[관을 내림], 사후토祠后土[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지냄], 제목주題木主[나무 신주에 글을 씀], 성분成墳[봉분封墳을 만듦], ⑮ 반곡反哭[집으로 돌아와 곡哭을 함]‖주인 이하는 영거靈車를 모시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을 함, 집에 이르면 곡을 함, 축祝이 신주神主를 영좌靈座에 안치함, 주인 이하는 청사廳事에서 곡을 함,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함〈이상 발인 당일〉, ⑯ 우제虞祭[우제를 지냄]‖초우제初虞祭는 발인 당일에 지냄, 축이 혼백魂帛을 묻음, 조석전朝夕奠을 파함, 유일柔日[을乙·정丁·기己·신辛·계일癸日]을 만나면 재우제再虞祭를 지냄, 강일剛日[갑甲·병丙·무戊·경庚·임일壬日]을 만나면 삼우제三虞祭를 지냄], ⑰ 졸곡卒哭[아침저녁 이외의 곡을 그침]‖삼우제를 지낸 후 강일을 만나면 졸곡제를 지냄, 주인과 형제는 거친 음식[蔬食]을 먹고 물은 마시되 과일과 채소는 먹지 않으며, 거친 자리를 깔고 나무를 베고 잠을 잠], ⑱ 부祔[합사合祀함][졸곡卒哭 다음날 새 신주를 사당祠堂에 합사하고, 부제祔祭를 지냄], ⑲ 소상小祥[소상을 지냄]‖초상初喪부터 일 년만에 지냄, 조석곡朝夕哭을 그침, 비로소 과일과 채소를 먹음], ⑳ 대상大祥[대상을 지냄]‖초상부터 이 년만에 지냄, 지팡이를 부러뜨려 구석진 곳에 버림, 체천遞遷한 신주神主를 옮겨 묘소 옆에 묻음,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침실로 돌아감], 담禫[담제를 지냄]‖대상을 지낸 후 중월中月에 지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어디까지나 '존비尊卑와 친소親疏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예禮의 일반적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례의 의식절차를 구성함에 있어 '혈연적 지위', '사회적 지위[卿·大夫·士]', '빈부貧富' 및 '연령年齡' 등에서의 차이를 표시관철함에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이외에도 그는 상례를 위시한 가례의 시행에 있어 '남녀男女 간의 대칭성對稱性·동등성同等性'이라는 질서감각을 수미일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상례의 시행에 있어 '주인主人과 주부主婦의 역할' 및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거행'의 양상에서 잘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상장례喪葬禮의 거행에 있어 전통적인 '유교적儒敎的 합리주의合理主義'의 정신, 즉 장례葬禮를 치름에 있어 "모두 풍수風水와 관련된 사설邪說을 살피지 않고, 음양陰陽에 따라 풍속에서 꺼리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22]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계승·천명하고 있다. 즉, 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시문집詩文集』에서의 「풍수론風水論 1~5」, 「갑을론甲乙論 1~2」[1817년]과 함께 『풍수집의風水集議』[1825년] 및 『목민심서牧民心書』[1818년~1821년] 등의 일련의 저술을 통해 거듭 표명하고 있는바, ② 그는 특히 『풍수집의』를 편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풍수설風水說은 세상에서 흔히 신봉하는 바 되어 덕의德義는 닦지 않고 장무葬巫에게 복福을 구하는데, 이러한 습속이 이미 고질화되어 그 미혹됨을 깨우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옛사람들의 (풍수론을 비판한: 필자 주) 유명한 논설을 모았으니, 이런저런 논의를 나란히 실어 그 득실을 드러내고 그 사이사이에 내 견해를 덧붙여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밝혔다. 선善을 좋아하고 사리事理에 밝은 자가 이 책

22) 『喪儀節要』 卷1(『定本』 제22책, 71쪽). "竝不諏風水邪說, 不拘陰陽俗忌."

을 접하여 풍수의 망령됨을 깨닫고 이로 인해 그 폐단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23]라고 피력했던바, ③ 이로써 그는 조선후기에 성행하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비롯된 산송山訟의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유교적 장례葬禮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24]

④ '제례'론

정약용은 『제례고정祭禮考定』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족의 '제례祭禮'론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저술은 그가 당시 조선의 제례뿐만이 아니라 예제禮制 일반이 '고례古禮의 정신精神'을 몰각한 채 원칙 없이 문란해진 현실에 대한 나름의 엄중한 문제의식[25]에서 출발하

23) 『風水集議』(『定本』 제22책, 324쪽). "風水之說, 世多崇信, 不修德義, 求福於葬巫, 習俗已錮, 無以曉惑. 玆輯古人名論, 甲乙竝存, 得失以顯, 間附瞽說, 以章其晦. 庶乎樂善明理者, 卽書悟妄, 因有以殺其濤瀾歟!"

24) 정약용의 『풍수집의』의 개요, 편찬, 서지사항, 구성과 내용 및 특징과 의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박종천(2015: 11~20))이 참조된다

25)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번에 보내는 『제례고정祭禮考定』 한 권은 내 한평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태뢰太牢와 소뢰少牢란 명칭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직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태뢰라 하고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소뢰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변두籩豆와 궤형簋鉶의 정연함이 마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음은 알지 못한다. 옛사람이 연향燕饗을 베풀고 제사祭祀를 지낼 때 모두 품급品級이 있어 매번 태뢰太牢·소뢰少牢·특생特牲·특돈特豚·일정一鼎·포해脯醢 등 여섯 가지 가운데 골라 사용하였으며, 나물 하나, 과일 하나도 감히 마음대로 더하고 빼지 못하였으니, 선왕先王의 법제法制의 엄격하고도 세밀함이 이와 같았다. 태뢰는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사용하는 물건이다. 오늘날 감사監司가 지방을 순시하게 되면 그 연향에 쓰이는 그릇의 숫자가 태뢰보다 다섯 배를 넘으니, 옛말에 '술과 음식 먹기를 물 흐르듯이 하며, 놀이를 즐기고 주색에 빠짐에 끝이 없다'라고 했던바, 불행하게도 요즘의 실정에 가깝다고 하겠다. 내가 지은 이 『제례고정』은 단지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릇 서울과 지방의 사신使臣과 빈객賓客의 접대 및 혼인婚姻과 회갑回甲 등 일체 연향에 쓰이는 음식에 대해 모두 획일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공경히 준행하여 감히 벗어남이

여, 특히 제례를 중국과 조선의 고금의 예서禮書를 두루 섭렵·참조하는 가운데 당시의 법과 현실에 맞게 새로 정립한 제례서祭禮書이다.

첫째, 정약용은 자신의 '제례'론을 입론함에 있어 '제법祭法', '제기祭期', '제의祭儀', '제찬祭饌'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고찰·소개하고 있는 바,[26] 즉 ① 「제법고祭法考」에서는 ㉠ 신하臣下는 삼대三代까지만 제사함, ㉡ 근친近親은 이대二代까지만 제사함, ㉢ 천자天子의 공경公卿은 사묘四廟임, ㉣ 국법國法에 대부大夫는 삼대까지 제사함, ㉤ 선정명유先正名儒도 삼대봉사三代奉祀를 주장함, ㉥ 벼슬하는 자는 삼대까지만 봉사奉祀함, ㉦ 잡직雜職과 향정직鄕亭職은 일묘一廟임, ㉧ 삼대가 지나면 신주神主를 체천遞遷하여 매안埋安함, ㉨ 불천위不遷位가 있으면 조묘祖廟와 네묘禰廟로 분리함, ㉩ 최장방最長房으로 옮기는 법은 주자朱子의 초년설初年說임, ㉪ 모두 체천하는 것이 주자의 만년정론晩年定論임, ㉫ 주자의 초년설은 송宋 나라의 법法을 따른 것임, ㉬ 주자의 만년설에 따라 예禮가 다하면 체천함을, ② 「제기고祭期考」에서는 ㉠ 사시四時의 제사는 천자天子만이 모두 거행함, ㉡ 제사나 천신薦新의 날자는 반드시 중월仲月을 씀, ㉢ 대부大夫는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사시四時의 제향祭享을 드림, ㉣ 대부와 사士는 하지夏至와 동지冬至에 천신薦新함, ㉤ 삭참례朔參禮는 대부가 맹월孟月 초하루에 행함, ㉥ 기일忌日에는 전헌奠

없도록 한다면, 세도世道에 또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玆所去『祭禮考定』一卷, 此吾平生之志也. 太牢·少牢之名, 世非不知, 唯知爲牛一·羊一·豕一與羊一·豕一之名, 其籩豆·簠簋之秩然, 若天成地造, 人所不知耳. 古人燕饗·祭祀, 皆有品級, 每於太牢·少牢·特牲·特豚·一鼎·鋪醢六者之中, 揀而用之, 其一菜·一果, 不敢任意增損, 先王法制之嚴且密如是也. 太牢者, 天子·諸侯之物也. 今監司巡歷之饗, 其鋪俎·籩豆之數, 較之太牢, 不啻五倍, 古所謂'飮食若流, 流連荒亡', 不幸近之. 吾玆『祭禮』, 不唯祭祀是爲, 凡京外使客支應, 及婚姻·壽考, 一切燕饗之饌, 竝宜畫一爲制. 使之欽此欽遵, 無敢踰越, 則於世道不亦有裨?)" 「寄兩兒」(『定本』 제4책, 274~275쪽).

26) 이하의 소개는 李霜芽(2014: 185~558)에 의거하였다.

獻의 예를 행함, ㅅ 묘제墓祭는 대부는 청명淸明과 한로寒露에 두 번, 사士와 서인庶人은 한식寒食에 한 번 지냄, ㅇ 묘제는 고조高祖에 그침, ㅈ 후토后土에 제사하는 것은 잘못임, ㅊ 나머지 세속世俗의 절일節日[삼원절三元節, 사중절四重日]에는 제사하지 않음을, ③ 「제의고祭儀考」에서는 ㉠ 고례古禮의 제사祭祀는 번다하여 따르기 어려움, ㉡ 고금古今의 예禮를 참작하여[參古酌今] 지금 가능한 예를 정함, ㉢ 재숙齊宿〈제사 이틀 전〉, ㉣ 시탁視濯〈제사 하루 전〉, ㉤ 시임視飪, ㉥ 진찬陳饌, ㅅ 석축釋祝[축문祝文을 읽음], ㅇ 유식侑食, ㅈ 초헌初獻[主人], ㅊ 아헌亞獻[獻者], ㅋ 삼헌三獻[獻者], ㅌ 천수薦羞[主婦], ㅍ 수조受胙, ㅎ 여수旅酬, ㉠ 고리성告利成, ㉡ 분준分餕, ㉢ 예필禮畢, ㉣ 천신薦新·삭참례朔參禮, ㉤ 기일제忌日祭, ㉥ 묘제墓祭를, ④ 「제찬고祭饌考」에서는 ㉠ 제찬오등祭饌五等[태뢰太牢, 소뢰少牢, 특생特牲, 특돈삼정特豚三鼎, 특돈일정特豚一鼎. 이외 정鼎이 없는 포해脯醢가 있음], ㉡ 생정육기牲鼎六器[작爵, 궤簋, 형鉶, 조俎, 두豆, 변籩], ㉢ 태뢰구정太牢九鼎[태뢰는 천자天子나 제후諸侯의 예禮로서, 두 등급이 있음. 상등上等은 구정九鼎으로, 작爵은 구헌九獻, 음식[食]은 팔궤八簋, 칠형七鉶, 구조九俎, 팔두八豆, 팔변八籩임], ㉣ 태뢰칠정太牢七鼎[태뢰의 하등下等으로, 작爵은 삼헌三獻, 음식은 육궤六簋, 오형五鉶, 칠조七俎, 육두六豆, 육변六籩임], ㉤ 소뢰오정少牢五鼎[소뢰는 대부大夫의 예禮로서, 작爵은 삼헌三獻, 음식은 사궤四簋, 삼형三鉶, 오조五俎, 육두六豆, 육변六籩임], ㉥ 특생삼정特牲三鼎[특생은 사士의 예禮로서, 작爵은 삼헌三獻, 음식은 이궤二簋, 삼형三鉶, 삼조三俎, 사두四豆, 사변四籩임], ㅅ 특돈삼정特豚三鼎[특돈에는 두 등급이 있음. 특돈삼정은 사士의 은전殷奠[전奠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임. 작爵은 일헌一獻, 음식은 이궤二簋, 일형一鉶, 삼조三俎, 이두二豆, 이변二籩임], ㅇ 특돈일정特豚一鼎[특돈의 하등으로, 작爵은 일헌一獻, 음식은 일조一俎, 이두二豆,

이변二籩임], ㉦ 포해지천脯醢之薦[희생[牲]이 없는 전奠으로, 작爵은 일헌一獻, 음식은 일두一豆, 일변一籩임], ㉧ 오등五等의 음식[饌]은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됨, ㉨ 군자君子의 행례行禮는 풍속風俗의 변개變改를 추구하지 않음[시속時俗을 준행遵行하되, 고례古禮가 제정한 명분名分의 근본을 견지함], ㉩ 정鼎[희생[牲]을 담는 제기祭器로, 시의時宜에 따름], ㉪ 작爵[술을 담는 제기], ㉫ 궤簋[대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은 '대敦'라고 부르며, 찰기장[黍]과 메기장[稷]을 담는 제기], ㉬ 형鉶[채소菜蔬를 넣은 국[羹]을 담는 제기], ㉭ 조俎[정鼎에 담았던 희생犧牲을 다시 옮겨 담는 제기], ㉮ 두豆[채소 절임[菹]과 젓갈[醢]을 담는 제기], ㉯ 변籩[대나무 그릇으로 지금은 자기를 쓰며, 대추, 밤, 포, 볶은 콩과 쌀로 만든 미숫가루[糗]를 담는 제기], ㉰ 육종六種의 기물器物은 아울러 백자白磁를 쓰며, 치수[尺寸]를 어겨서는 안 됨, ㉱ 시향時享[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거행함], ㉲ 천신薦新[하지夏至와 동지冬至에 거행함. 길제吉祭임], ㉳ 삭참朔參[정월 초하루와 사시四時의 맹월孟月 초하루에 거행함], ㉴ 기일忌日[기일에 지내는 제사], ㉵ 전묘展墓[청명淸明과 한로寒露에 거행함], ㉶ 유사고유有事告由, ㉷ 시졸전始卒奠, ㉸ 습전襲奠, ㉹ 조석전朝夕奠, ㉺ 소렴전小斂奠, ㉻ 대렴전大斂奠, ㉼ 성복成服, ㉽ 삭전朔奠, ㉾ 망전望奠, ㉿ 천신薦新[하지夏至와 동지冬至,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거행함. 상제喪祭임], ㉲ 계빈전啓殯奠, ㉳ 조전祖奠, ㉴ 견전遣奠, ㉵ 묘좌전墓左奠, ㉶ 제주전題主奠, ㉷ 초우제初虞祭, ㉸ 재우제再虞祭[초우제를 지낸 뒤 하루 걸러 지냄], ㉹ 삼우제三虞祭[재우제를 지낸 뒤 사흘 뒤에 지냄], ㉺ 장고부사將告祔事[다음날 있을 부묘祔廟의 일을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임], ㉻ 졸곡卒哭[말우末虞를 졸곡으로 삼고, 이를 '성사成事'라고 이르며, 별도의 제사는 지내지 않음], ㉼ 부제祔祭[삼우제를 지낸 다음 날 거행함], ㉽ 기폄旣窆[하관下棺한 다음에는 조석전朝夕奠이 없음], ㉾ 기장旣葬[장례葬禮가 끝

난 뒤에는 삭일전朔日奠이 있음], ㉤ 생일生日[전奠이 없음], ㉥ 연제練祭[초상으로부터 만 일 년이 되면 연복練服을 입는데, 이때 연제를 지냄]상제祥祭[연제가 곧 소상제小祥祭가 되며, 다시 만 일 년이 되면 호관縞冠을 쓰는데 이때 대상제大祥祭를 지냄]담제禫祭[대상제를 지내고 한 달을 걸러 섬관纖冠을 쓰는데 이때 담제를 지냄], ㉦ 길제吉祭[삼년상이 끝나면 별도의 길제를 지내지 않음. 여기서 길제란 약禴·사祠·상嘗·증烝과 같은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를 말함]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27]

---

27) 『의례儀禮』에서는 사士의 제사의 종류와 의식절차에 대하여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권卷15],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권16], 「유사철有司徹」」[권17]편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① '특생궤식례'의 경우 ㉠ 서일筮日·서시筮尸〈제사 사흘 전〉·숙시宿尸·숙빈宿賓〈이상 제사 이틀 전〉, ㉡ 시탁視濯·시생視牲·위기爲期[제사 시간을 정함]〈이상 제사 하루 전〉, ㉢ 진설陳設·설위設位, ㉣ 음염陰厭[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적장자嫡長子를 사당의 서남쪽 모퉁이의 으슥한 곳에 배향하여 제사 지내던 의례]축축祝祝, ㉤ 영시迎尸·시구반尸九飯, ㉥ 초헌初獻[주인主人]·아헌亞獻[주부主婦]·삼헌三獻[빈賓], ㉦ 가작加爵·헌시獻尸[사자嗣子]·여수旅酬·무산작無算爵·헌시獻尸[이利]·고리성告利成, ㉧ 송시送尸·귀시조歸尸俎·철서수徹庶羞·준雋·양염陽厭[성년이 되기 전에 죽은 서자庶子를 사당의 북서쪽 모퉁이의 햇볕이 드는 곳에 배향하여 제사 지내던 의례]·고리성告利成·고사필告事畢, ㉨ 송빈送賓·철조조徹阼俎·귀빈조歸賓俎·출묘出廟로, ② '소뢰궤식례'의 경우 ㉠ 서일筮日〈제사 열흘 전〉, ㉡ 숙계시宿戒尸〈제사 이틀 전〉·숙제관宿諸官·서시筮尸·숙시宿尸·위기爲期〈이상 제사 하루 전〉, ㉢ 시생視牲·시살視殺·탁개濯漑, ㉣ 진설陳設·재조載俎, ㉤ 음염陰厭, ㉥ 영시迎尸·시십일반尸十一飯, ㉦ 초헌初獻[주인]·아헌亞獻[주부]·삼헌三獻[빈], ㉧ 고리성告利成·시출묘문尸出廟門·준雋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상례喪禮」편에서의 제사의 종류와 의식절차로는 ① '사시제四時祭[중월仲月에 지냄]'의 경우 ㉠ 복일卜日〈제사 열흘 전〉, ㉡ 재계齋戒〈제사 사흘 전〉, ㉢ 설위設位·진기陳器, ㉣ 성생省牲·척기滌器·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봉주취위奉主就位, ㉦ 참신參神, ㉧ 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유식侑食, ㉫ 합문闔門·계문啓門, ㉬ 수조受胙, ㉭ 사신辭神·납주納主·철徹·준雋으로, ② '초조初祖[시조始祖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시조를 잇는 종자宗子가 동지冬至에 지냄]'의 경우 ㉠ 재계齋戒〈제사 사흘 전〉, ㉡ 설위設位·진기陳器, ㉢ 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성복盛服·취위就位, ㉥ 강신降神·참신參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철徹·준雋으로, ③ '선조先祖[선조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시조始祖와 고조高祖를 잇는 종자宗子가 입춘立春에 지냄]'의 경우 ㉠ 재계齋戒〈제사 사흘 전〉, ㉡ 설위設位·진기陳器, ㉢ 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둘째, 정약용은 제례祭禮를 특히 '예禮의 본령本領'으로서 중시한 바 있다. 즉, ① 그가 보기에 '예禮'란 원래 '제례'를 의미하였다. 즉, '예禮'자의 "기示는 신神을 나타내고 곡曲은 죽기竹器를, 두豆는 목기木器를 각각 뜻한다. 이에 '신기神示 옆에 변두籩豆와 궤조簋俎를 진설한 것'이 되니", 따라서 이러한 제례가 바로 '예禮의 원의原義'가 된다고 보았다.[28] ② 나아가 그는 "옛날의 제사祭祀 지내는 예는 원래 연향燕饗의 의식을 모방한 것이다. 살아계실 때는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지극히 하였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 공경을 지극히 하였으니, 그 뜻은 같은 것"[29]이라거나 "옛날에는 연향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곧 제사에서 사용하는 그릇이었고, 연향에서 먹는 음식이 곧 제사에서 올리는 음식이었

성복盛服·취위就位, ㉥ 강신降神·참신參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철徹·준餕으로, ④ '네禰[선친先親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선친을 잇는 종자宗子 이상이 계추季秋에 지냄]'의 경우 ㉠ 복일卜日〈제사 한 달 전 하순〉, ㉡ 재계齋戒〈제사 사흘 전〉, ㉢ 설위設位·진기陳器, ㉣ 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성복盛服, 예사당詣祠堂·봉신주奉神主·출취정침出就正寢, ㉦ 참신參神·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납주納主·철徹·준餕으로, ⑤ '기일忌日[기일에 지내는 제사]'의 경우 ㉠ 재계齋戒, ㉡ 설위設位·진기陳器, ㉢ 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변복變服, 예사당詣祠堂·봉신주奉神主·출취정침出就正寢, ㉥ 참신參神·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납주納主·철徹로, ⑥ '묘제墓祭[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삼월三月 상순上旬 가운데 택일擇日하여 지냄]'의 경우 ㉠ 택일擇日[삼월三月 상순上旬 가운데 택일함], ㉡ 재계齋戒, ㉢ 구찬具饌〈이상 제사 하루 전〉, ㉣ 쇄소灑掃, ㉤ 포석布席·진찬進饌, ㉥ 참신參神·강신降神, ㉦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 사신辭神·철徹, ㉨ 제후토祭后土[포석布席·진찬進饌, 강신降神·참신參神·삼헌三獻, 사신辭神·철徹·퇴退]로 구성되어 있다.

28) 「答李汝弘【載毅】」(『定本』 제4책, 144~145쪽). "禮者, 祭禮也. 示, 其神也; 曲者, 竹器也; 豆者, 木器也. 神示之傍, 陳設籩豆·簋俎, 非祭禮乎? 故「堯典」曰: '典朕三禮', 三禮者, 天神·地示·人鬼之祭禮也. 祭禮之謂之'禮', 非其原義乎?"

29)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92쪽). "古者祭祀之禮, 原倣燕饗之儀. 生則燕饗以致歡, 死則祭祀以致敬, 其義一也.."

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여 그 예禮가 다르지 않았다."[30]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제례가 곧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해야 한다'는 유교 본연의 '인도주의人道主義의 정신精神'을 함축하고 있음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③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또한 제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길례吉禮"[31]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약용은 '예禮의 본질 및 기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예란 기본적으로 "선왕先王의 대법大法이요 성인聖人의 지극한 가르침으로서 천세토록 준수해야 하는 것"[32]이자, "간소하면서도 박하지 않고 조화로우면서도 번거롭지 않으니, 곧 성인의 은미한 글"[33]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② 또한 그는 ㉠ '예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예란 것은 상하上下를 구분하고 귀천貴賤을 다르게 함으로써 백성을 법도法度 안에로 들어 넣는 것"[34]으로 규정했던바, ㉡ 이에 그는 예제에서의 '한계[防]'와 '등급[等]'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참월僭越[踰]'을 경계한 바 있으며, ㉢ 나아가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예제禮制의 제정에 있어 특히 '사회적 신분과 지위[卿·大夫·士]' 및 '빈부貧富' 등에서의 차이를 반영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넷째, 정약용은 '예제禮制를 제정하는 기본원칙'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시대에 맞게 적절한 제도

30)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3쪽). "古者燕器仍是此器, 燕饌仍是此饌. 故事死如生, 其禮無二也."

31)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7쪽). "〇[鏞案] 祭者, 吉禮也."

32) 『祭禮考定 1: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93쪽). "此先王之大典, 聖人之至訓, 千世之所宜遵."

33)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0쪽) "簡而不薄, 和而不煩, 此聖人之微文也."

34)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1쪽). "〇[鏞案] …… 禮也者, 所以別上下而殊貴賤, 以納民於軌度者也."

를 만들되[因時制宜] 고금古今의 예禮를 참작한다[參古酌今]면 명칭[名]과 의리[義]에 따라 정해진 분수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35]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②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또한 "고례古禮는 지나치게 번다하고 금례今禮는 지나치게 간소하여 중도中道를 행하기가 쉽지 않음"에 무엇보다 제례制禮의 기본적 지향점을 "예禮의 대의大義"[36] 또는 "옛 사람이 제재制裁한 명분名分의 근본",[37] 즉 어디까지나 '고례古禮의 정신精神'에 두어야 함을 새삼 역설하기도 하였다. ③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에 따라 고례古禮, 예서禮書, 제가諸家의 주석註釋, 법전法典[『經國大典』], 시속時俗, 인정人情 및 번繁·간簡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④ 또한, 그는 ㉠ 예禮에 정해진 제도가 없다거나, 예경禮經에 명문규정이 없다거나, 또는 예제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사람마다 스스로 의리義理에 비추어 제멋대로 예법을 만들어[自義起] 마침내 원야原野의 풍속을 분분하게 만듦으로써 따라 좇을 곳을 없게 만들"[38]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서[自爲制] 분분히 법도를 무너뜨려 분수分數를 어기고 법法을 위반하"[39]는 후세의 행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중히 경계한 바 있으며, ㉡ 반면 극히 예외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고례古禮에 근거가 없는

35)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2쪽). "因時制宜, 參古酌今, 庶不大悖於名義之定分也."

36) 『祭禮考定 1: 「祭儀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4쪽). "[今宜參古酌今, 遵其可行, 闕其所變, 不失其大義也.] 古禮太繁, 今禮太簡, 未易中也."

37)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3쪽). "君子行禮, 不求變俗, 但求古人制裁名分之本而謹守其意, 罔敢踰越焉, 則小德雖出入可也."

38) 『祭禮考定 1: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1~182쪽). "○[鏞案] …… 禮無定制, 人自義起, 遂令原野之俗, 紛紛然莫適所從也. …… ○[又按] …… 蓋緣禮經無文, 人自爲制, 紛紛如此."

39)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92쪽). "今人 …… 尙多昧昧, …… 於是, 人自爲制, 紛綸[淪]潰裂, 踰分越法, …… "

경우, 이제 또한 풍속風俗을 따라 제도를 만드"[40]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감행한 바 있기도 하다. ⑤ 한편, 그는 당시 조선에서의 사족의 예제를 정립함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만들 때 대부大夫의 제사라 하더라도 삼대三代까지만 그치게 한 것은 제후국諸侯國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조선이 대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을 가짐에 유의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41] 또한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엄격히 적용한 바 있으며, ㉡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주장한 김장생金長生[沙溪, 1548~1631]의 예론을 비판·거부하기도 하였다.[42]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자신의 『제례고정』에 대해 "내 한평생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자평했을 정도로 그의 방대한 예학연구에 있어 대표적 성과 가운데 하나로 자부한 바 있다.[43] 여기서 ① 그가 특히 자부했던 부분은 「제찬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찬오등祭饌五等[태뢰太牢, 소뢰少牢, 특생特牲, 특돈特豚, 포해脯醢]'의 구체적 내용을 『의례儀禮』와 『예기禮記』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해 낸 부분이다. ②

---

40)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9쪽). "○上食之饌, 於古無據, 今且循俗而爲之制, …… "

41)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0쪽). "[故我國立制, 雖大夫之祭, 止於三代, 以侯邦也.] …… ○[鏞案] 我邦禮制, 多遵溫公『書儀』·朱子『家禮』·丘氏『儀節』. 然是三賢皆天子之臣也. 或身爲上卿, 或追封國公, 其位秩皆古諸侯也, 故其著之禮, 而傳之家自, 多用侯禮. 我邦之人, 忘其本分, 動欲摸擬, 則犯于僭者多矣, 宜謹守『國典』."; 『祭禮考定 一: 「祭期考」』(『定本 與猶堂全書 22』, 『喪儀節要』, 卷二, p. 179) "○[鏞案] 『書儀』·『家禮』全擧四時之祭者, 天子之卿得用諸侯之禮也. 諸侯之大夫·士, 其敢爲是乎?"

42)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1쪽). "○[鏞案] 東儒唯沙溪,【金文元公·長生】 最爲知禮, 而特從四世之制. 此所以擧世遵用也. …… 藩邦之士·庶人, 其敢倚是乎?"

43) 정약용의 『제례고정』의 성과 및 의미와 관련해서 李霜芽(2014: 152~165)는 ① 정약용의 저술 가운데 유일한 제례祭禮 행례서行禮書인 점, ② 예서禮書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 점, ③ 기존 통설通說의 오류를 밝히고 새로운 예禮를 정립한 점, ④ 잘못된 조선의 속례俗禮를 상세한 논증을 통해 바로잡은 점, ⑤ 조선의 법과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예를 정립한 점, ⑥ 정약용의 다른 예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그는 "이 다섯 등급[여기서는 '太牢 上等', '太牢 下等', '少牢', '特牲', '特豚'을 말함: 필자 주]의 수數는 내가 일찍이 『제례고祭禮考』를 편찬할 때 「빙례聘禮」·「공사례公食禮」·「소뢰례少牢禮」·「특생례特牲禮」 및 「예기禮器」·「옥조玉藻」·「사상례士喪禮」·「사우례士虞禮」 등 여러 편篇에서 주워 모으고 조사하여 그 수를 알게 된 것"[44]으로서, ③ 그 적용범위는 제례뿐만 아니라 관례, 혼례, 상례를 비롯하여 사신과 빈객의 접대 및 회갑 등 일체의 연향燕饗을 포괄하고 있다.

2) '입후'론

정약용은 「입후론立後論 1~3」 및 『시문집詩文集』에서의 여타 예학禮學 관련저술을 통해 특히 '입후立後', 즉 '양자養子'문제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며 일찍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족士族의 입후'론을 구성하는 한편, 또한 이를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① '입후'론의 구성내용

정약용은 상기한 바대로 강진康津에서의 유배 중인 1802년[純祖 2]부터 상사喪事에 대해 본격적인 예학적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선 『예고서정禮考書頂』과 『상례사전喪禮四箋』이란 저술을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나름의 독자적인 가례관家禮觀에 의거하여 '사족의 입후'론을 정립·제시하기에 이른다.

첫째, 정약용이 '사족의 입후'론을 예제개혁론禮制改革論의 일환으로

44) 『牧民心書 Ⅱ』(『定本』 제28책, 201쪽). "○[案] 此五等之數, 余嘗編『祭禮考』, 「聘禮」·「公食禮」·「少牢禮」·「特牲禮」及「禮器」·「玉藻」·「士喪禮」·「士虞禮」諸篇, 採掇查驗, 以知其數者也."

입론하기에 이른 직접적 계기는 무엇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부계혈연자父系血緣者인 동성친同姓親 중심의 문중조직門中組織이 확대·강화되고 또한 종법제宗法制에 따른 가계계승家系繼承과 이에 따른 제사祭祀가 특별히 중시되면서, 어느덧 사족계급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법상 "가家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어서 "후사를 세울 수 없"는 서인庶人[45]에서조차도 어떠한 예학적 근거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입후', 즉 '양자'가 널리 유행하는 현실, 즉 ① 그가 보기에 예법상 가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종자宗子[大宗의 아들]의 적장자適長子만이 후사後嗣가 없는 경우 후사를 세울 수 있음에도, 당시에는 서자庶子[次子 이하의 아들, 支子]조차도 후사가 없으면 으레 후사를 세우는 현상, ② '후사'란 '선대先代'와 대對가 되는 명칭으로, 죽은 사람만이 후사를 세울 수 있음에도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버젓이 후사를 세우는 현상, ③ 이미 후사를 세웠으나 뒤에 아들을 낳게 됨에 후사로 데려온 사람을 그전대로 돌려보내는 '파양破養', ④ 후사된 사람이 일찍 죽으면 다시 후사를 새로 세우는 '차양次養', ⑤ 첩妾의 자식이 있어도 이는 외면하고 동성친의 적자嫡子, 심지어는 소원한 종족을 데려다가 후사로 삼는 현상, ⑥ 심지어는 "자기 적자를 주어 남의 후사로 만들고는 다시 자기의 후사를 세우"는 등의 온갖 폐단이 난무함에, 결국에는 각종 원망이 난무하고 서로 사랑을 질투하며 재물을 다투어서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부자父子의 천륜天倫조차 무람없게 되고 만 현실[46]에 있었다.

---

45) 「立後論 2」(『定本』 제2책, 290쪽). "庶人者, 未成家者也. …… 【明上庶人不立後】"

46) 「立後論 2」(『定本』 제2책, 290~291쪽). "後者, 對先之名. 死者有後, 生不得有後也. …… 今也, 生者立後, 或立後而後生子者, 還其後者, 謂之'破養'. …… 或後者短命, 更立其次, 謂之'次養'. …… 或妾子訛詐而必立後, 妾者曰: '我, 血之所屬', 後者曰: '我, 統之所在', 妒愛而罷貲. 或與適子爲人後, 而更立己後, …… 父子之倫, 不其褻歟?"; 「答李汝弘」(『定本』 제4책, 173쪽). "宜取立後之法, 裁酌遵古, 凡庶姓之家, 不得以疎遠之族立之爲後."

둘째, 정약용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족의 입후의 대원칙'을 네 조목으로 정립·제시한 바 있다. 이에 네 조목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자庶子[次子 이하의 아들: 필자 주]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경우에는 후사를 세울 수 없다. 그가 사망한 뒤에는 형제兄弟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그의 사망한 뒤의 일을 부탁하고 그의 제사祭祀를 맡기며【옛날에는 요사夭死한 사람과 후사後嗣가 없는 사람의 경우 조부祖父에게 붙여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이 예禮를 반드시 시행할 수가 없으니, 역시 이른바 '적당함[宜]과 시속時俗[俗]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의 재산을 전하면서도 후사라 부르지 않고, 그를 위해 참최복斬衰服도 입지 않도록 한다."[47]

② "종자宗子[大宗의 아들: 필자 주]의 적자適子가 사망했는데, 적손適孫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적손으로 종宗을 삼으며, 적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次子를 세워 적자로 삼고 차자의 아들을 (사망한: 필자 주) 적자의 후사로 세우지 않는다. 적자가 중重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거나 또는 종자가 아직 살아 있어 중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자의 아들이 백부伯父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의리義理는 없다. 따라서 모름지기 부父가 사망하고 중重을 이어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후사를 세울 수 있다."[48]

---

47) 「立後論 3【此論, 壬戌七月作】」(『定本』 제2책, 292쪽). "庶子無後者, 不得立後. 擇於昆弟之子, 屬其後事, 託其祭祀,【古者, 殤與無後, 從祖祔食. 今此禮必不可行, 亦所謂'從宜·從俗'】傳其財計, 理不名爲後, 不令服斬, 其一也."

48) 「立後論 3【此論, 壬戌七月作】」(『定本』 제2책, 292쪽). "宗子之適子亡, 而有適孫者, 仍以孫爲宗, 其無適孫者, 立次子爲適, 而不以次子之子立爲適子之後. 以適子未及受重而死, 且

③ "'후後'란 '선대先代[先]를 계승함'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따라서 오직 어버이[親]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만 '선대'라 칭할 수 있나니, (선대가 아직: 필자 주) 살아 있는데 후사를 세우는 경우는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것이다. 모름지기 종자宗子가 사망한 뒤에라야 비로소 후사를 세움이 허락되므로 만약 종부宗婦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후사는 세울 수 없다."[49]

④ "부모父母의 명칭은 고칠 수 없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父母'라 부르고, 사망하셨을 때는 '고비考妣'라 부른다. 후사後嗣로 들어간 어버이[所後之親]의 경우는 이 분들이 이미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후사가 되어 '선고先考·선비先妣'라 부르도록 하고, 낳아준 어버이[所生之親]의 경우는 살아계실 때는 '부모'라 부르고 사망하셨을 때는 '선부先父·선모先母'라 불러야 하니, 이는 예禮에 없는 예禮이다.【전여성田汝成은 '후사後嗣로 들어간 부모父母는 「세부世父·세모世母」라 불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미안未安할 듯하다. 혹은 '종고宗考·종비宗妣'라 부르는 것은 예禮의 뜻에는 합당한 듯하나 근거가 없다】"[50]

宗子方在世而持重, 則次子之子, 爲伯父斬衰, 無義也. 故須父死受重, 方得立後, 其二也."

49) 「立後論 3【此論, 壬戌七月作】」(『定本』 제2책, 292쪽). "'後'者, 嗣先之名. 親唯旣死而后, 可稱爲'先', 生而立後者, 古未之聞也. 須宗子死後, 方許立後, 若宗婦先死, 不得立後, 其三也."

50) 「立後論 3【此論, 壬戌七月作】」(『定本』 제2책, 292~293쪽). "父母之名, 不可易也. 生曰: '父母', 死曰: '考妣'. 所後之親, 及其旣死, 始令爲後, 則曰: '先考·先妣'; 所生之親, 生云: '父母', 死云: '先父·先母', 抑亦無於禮之禮, 其四也.【田汝成云: '所後父母, 宜稱「世父·世母」', 恐未安. 或稱「宗考·宗妣」, 似合禮意, 然未有所據.】"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이상과 같이 '사족의 입후의 대원칙'을 정립한 다음, "국가國家에서 법령法令을 이와 같이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어기지 않도록 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우선 이를 기록하여 훈령訓令으로 삼으니, 우리집안 자손子孫만이라도 한결같이 이 예제禮制를 준수하고 감히 조금도 어김이 없도록 해야 할 것"[51]이라는 희망을 부기한 바 있다. 이로써 그는 이 원칙이 적어도 사족의 입후에 관한 한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이 조화를 이루어 예제禮制 상 일반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짐을 자신하였고, 아울러 장차 조선의 국가적 법령으로 채택되기를 염원·기약하기에 이른다.

② '입후'론의 적용사례

한편, 정약용은 자신이 정립한 상기한바 '사족의 입후의 대원칙'을 단순히 예론禮論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집안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실천하기도 하였다. 즉, 1807년[純祖 7] 7월에 중형仲兄 정약전丁若銓[巽菴, 1758~1816]의 맏아들[嫡長子]인 학초學樵가 17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초는 사망 당시 비록 결혼은 하였으나 자식은 없는 상태였다.[52] 이에 고향에서는 정약용의 형수인 학초의 모친과 정약용의 두 아들이 주동이 되어 당시의 관습에 따라 족질族姪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여 학초의 후사後嗣로 세울 것을 의논하기에 이른다.[53]

---

51) 「立後論 3【此論, 壬戌七月作】」(『定本』 제2책, 293쪽). "國家制令如是, 令民勿踰則大善, 今玆未能. 聊書爲訓, 令爲吾子孫者, 一遵斯制, 毋敢踰咫尺寸."

52) 「兄子學樵墓誌銘」(『定本』 제3책, 308쪽). "樵也, 生於乾隆辛亥之春二月初十, 死於嘉慶丁卯之秋七月十九, 其壽僅十七. 娶坡平尹氏, 相國溉之後也."

53) 정약용은 당시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학기學箕[정약용의 族姪: 필자

한편, 강진康津의 유배지에서 편지로 이 소식을 접한 정약용은 이에 대해 상기의 원칙에 의거하여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즉 그는 '학초의 후사를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후사를 세우는 일[立後事]을 예禮의 옛뜻[古義]에 기준해서 보면, 학초의 경우에는 법法으로 보아 마땅히 후사가 없어야 한다."[54]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뜻을 당시 흑산도黑山島에 유배 중인 중형에게 편지로 전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은 자신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예학적禮學的 논거論據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① "비록 대종大宗의 아들이라도 미처 중重을 계승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를 위해: 필자 주) 후사後嗣를 세우지 않고 차자次子를 세우는 것이 예禮"[55]이며 "고법古法에 지자支子[次子 이하의 아들:

주]【자字는 희열希說】가 그의 아들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의탁하여 글을 배우도록 하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모습이 준수하여 형수兄嫂께서 보고서는 학초學樵의 후사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무장武牂[정약용의 맏아들: 필자 주]과 문장文牂[정약용의 둘째아들: 필자 주] 두 아이들도 큰 욕심이 생겨 그를 끌어다가 당질堂姪로 삼고 싶어서 학기와 상의하였더니, 학기가 '자산玆山[丁若銓: 필자 주]과 다산茶山[丁若鏞: 필자 주]의 뜻이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나는 의당 바치겠다'라고 하였답니다. 두 아이들이 다산茶山으로 편지를 보내왔기에 답장에 '일로 보아서는 매우 좋으나, 예禮로 보아서는 심히 어긋나니, 예는 어길 수 없다'고 하니, 두 아이들은 '예의 뜻이 이미 그러하다면 마땅히 계획을 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씨伯氏[丁若鉉: 필자 주]께서도 편지를 주시어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무척 그르게 여겼는데, 그대의 말이 이와 같으니, 정말로 나의 뜻과 합치된다'고 하셨습니다.(學箕【字希說】託其子於我輩, 使之學文, 其相貌俊秀, 嫂氏見之, 欲爲樵也立後. 武·文兩兒, 亦生大慾, 欲引之爲堂姪, 與箕相議, 箕曰: '玆山·茶山之意, 若欲取之, 吾當獻之.' 二兒來書茶山, 答曰: '於事甚好, 於禮甚乖, 禮不可違也', 二兒曰: '禮義旣然, 當破計矣.' 伯氏下書曰: '吾聞此言, 心甚非之, 君言如此, 正合吾意.')"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1쪽).

54)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立後事, 律之以古義, 樵也, 法當無後."

55) 「兄子學樵墓誌銘」(『定本』 제3책, 308쪽). "余告仲氏曰: '雖大宗之子, 未及承重而死, 則不爲之立後, 而立其次子, 禮也. 況先生本是支子乎?……'"

필자 주]의 경우에는 후사가 없으면 대代가 끊어지는 것"[56]이 원칙인데, "하물며 선생先生[丁若銓: 필자 주]은 본디 지자임에랴?"

② "지금 학초는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만약 어머니를 같이 하는 아우가 있다면 법으로 마땅히 그 아우가 대代를 이어야 하는 것이요, 학초를 위해 (별도로: 필자 주) 후사를 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57]으니,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령 학초에게 친형제의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초를 위해 친형제의 아들로써 별도로: 필자 주) 후사를 세움이 부당한데 더구나 아득히 먼 일족一族의 아들인 경우에는 더욱 불가하다."[58]

③ "서제庶弟[庶母에게서 태어난 아우: 필자 주]는 비록 동복同腹은 아니지만 옛날의 경經이나 지금의 법法에 모두 적출嫡出의 아들과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59]음에, 지금 "선생[丁若銓: 필자 주]에게 서자庶子[妾의 자식: 필자 주] 학소學蘇가 있으니, 뒷날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세워 학초의 후사로 삼음이 고금古今을 참작해보아 (현실적으로: 필자 주) 거의 마땅할 것"[60]이요, "하물며 우

56)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然古法, 支子無後則絶."

57)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2쪽) "今樵也未及繼禰而死, 若有同母弟, 則法當弟及, 不當爲樵也立後.";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兄亡弟及, 可也."

58)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2쪽). "樵也雖有親昆弟之子, 不當立後, 況於遙遙遐族之子乎?"

59)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2쪽). "庶弟雖非同腹, 古經今法, 皆與嫡出之子, 毫無所異."

60) 「兄子學樵墓誌銘」(『定本』 제3책, 308쪽). "余告仲氏曰: '…… 先生有庶子學蘇, 他日産子, 立之爲樵也後, 庶乎酌古今而得宜也.'"

리는 (支子로서: 필자 주) 받드는 바가 없는데, 소원한 일가一家의 아들을 (학초의 후사로: 필자 주) 취할 수 없"다.[61]

④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고법古法에 지자支子의 경우에는 후사가 없으면 대代가 끊어진다. 반면 종자宗子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이을 경우에는 형제兄弟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조부祖父를 이을 경우에는 종형제從兄弟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증조曾祖를 이을 경우에는 재종형제再從兄弟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나니, 소몽所蒙[혈연관계: 필자 주]이 있으면 이들 가운데서 후사를 세움이 예禮이니, 이것이 대강령大綱領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맏아들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 후사를 세우지 않으며,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맏아들에게 후사가 없다면 후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절목節目이다. 대강령이 이미 올바르다면, 작은 절목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된다."[62]

물론 정약용은 대략 이상과 같은 자신의 예학적 논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조카 학초의 후사를 세우는 일에 반대했지만, 이러한 그의 입

61) 「兄子學樵墓誌銘」(『定本』 제3책, 308쪽). "余告仲氏曰: '…… 況我無所戴, 而可取疎遠之子乎? ……'"

62)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古法, 支子無後則絶. 繼禰之宗, 取昆弟之子; 繼祖之宗, 取從昆弟之子; 繼曾之宗, 取再從昆弟之子, 有所蒙則爲之後, 禮也, 此是大綱領. 父在而長子無後而死, 則不立後; 父沒而長子無後, 則得立後, 此是小節目也. 大綱旣正, 則小節出入可也."; 「答李汝弘」(『定本』 제4책, 172쪽). "但先王之法, 我有所戴, 方爲其後, 無所戴, 則不爲後也. 故繼禰者, 取昆弟之子爲後; 繼祖者, 得取從父昆弟之子爲後; 繼曾祖者, 得取從祖昆弟之子爲後; 繼高祖者, 得取族昆弟之子爲後. 過此以往, 祖遷於上, 而宗易於下, 不相爲後."

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집안에 커다란 분란과 반발을 초래함으로써[63] 결국 형수에게 편지로 "비록 예禮에는 어긋나지만, 일[학초의 후사를 세우는 일: 필자 주]로 보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차마 저지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누워있겠습니다. 자산玆山[丁若銓: 필자 주]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의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십시오."[64]라고 전하며 사실상 물러서고 말았다.

3) '거가사본[제가·치가·기가·보가]'론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어느덧 '폐족廢族'으로 전락하고 만 자

63) 정약용은 당시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형수께서 편지를 보내와 '아주버님이시여 저를 살려주시오. 아주버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비록 저를 도와주시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정녕 저에게 차마 이러신단 말입니까? 자산玆山[男便인 丁若銓: 필자 주]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야 비록 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청상과부靑孀寡婦인 며느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청상의 애절한 슬픔에 예禮가 무슨 소용이겠소? 비록 예에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를 데리고 오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원망하는 듯 애걸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여, 편지를 읽자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 몸져누운 제 아내조차 편지를 보내와 '(후사를 세워도 된다는: 필자 주) 한 마디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성이 우레처럼 땅을 울리고 참혹한 구름과 처연한 서리가 돌변하여 따뜻한 봄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예를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인정人情을 살피십시오. 만약 다시 금지하신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한 노끈에 같이 목을 맬 것이니, 어찌 다시 예를 언급할 여지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감히 잘잘못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두 통의 편지를 쓰시어 하나는 무장武牂[정약용의 맏아들: 필자 주]에게 보내시고 다른 하나는 형수님께 보내시어 조속히 결말을 짓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嫂氏書曰: '叔兮活我. 叔兮矜我. 雖不助我, 胡寧忍我? 玆山有子, 我則無子. 我雖有子, 孀婦無子. 情之絶悲, 禮於何有? 禮雖亡矣, 我則取之.' 千言萬語, 如怨如慕, 如泣如訴, 覽之淚落, 無言可答. …… 病妻書曰: '一言纔落, 歡雷動地, 慘雲凄霜, 變爲陽春. 勿復言禮, 少察人情. 若更禁之, 姑婦二人, 一繩雙縊, 豈復有言禮處乎?' 我於此事, 不敢皁白. 亟作二札, 一抵武兒, 一抵嫂氏, 從速完定若何?)"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1~212쪽).

64)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1쪽). "於是答曰: '於禮雖乖, 於事甚好. 我則臥矣, 不忍沮之. 往復玆山, 一聽處分.'"

신의 가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차후 가문의 중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애타게 모색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두 아들에게 특별히 "주자朱子는 '화순和順은 제가齊家의 근본이요, 근검勤儉은 치가治家의 근본이며, 독서讀書는 기가起家의 근본이요, 순리循理는 보가保家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거가사본居家四本'이다. …… 너희들은 이 문목門目에 의거하여 정자程子와 주자의 책과 함께 『성리대전性理大全』, 『퇴계집退溪集』의 「언행록言行錄」, 『율곡집栗谷集』, 『송명신록宋名臣錄』, 『설령說鈴』, 『작비암일찬昨非菴日纂』, 『완위여편宛委餘篇』 및 우리나라 여러 선현先賢들의 저술 중에서 차례로 뽑아 서너 권을 만든다면, 이 또한 한 부의 좋은 책이 될 것이다. …… 이것을 모두 이것을 모두 합하여 '『거가사본居家四本』'이라 이름붙이고 책상 위에 두고 항상 읽는다면 어찌 몸과 마음에 크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힘쓰도록 하여라."[65]라고 권유한 바 있으며, 또한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이어 강진에서 직접 『거가사본』이란 제목의 저술을 편찬하기도 하였다.[66]

---

65)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和順, 齊家之本; 勤儉, 治家之本; 讀書, 起家之本; 循理, 保家之本', 此所謂'居家四本'也. …… 汝其依此門目, 就程朱書, 及『性理大全』, 『退溪集』「言行錄」, 『栗谷集』, 『宋名臣錄』, 『說鈴』, 『昨非菴日纂』, 『宛委餘篇』, 及我東諸賢所記述, 彙次作三四卷, 亦一部佳書也. …… 合而名之曰: '『居家四本』', 置之案上, 常目存之, 豈不大有益於身心? 汝曹其勉之."

66) 『거가사본居家四本』은 정약용이 편집[輯]하고 읍중제자인 황경黃褧[소자(小字)는 안석(安石), 호는 취몽재(醉夢齋)·양포(蘘圃), 1792~1867]이 기록[錄]한 저술로서, 그 내용은 「화순和順: 제가지본齊家之本」·「근검勤儉: 치가지본治家之本」·「독서讀書: 기가지본起家之本」·「순리循理: 보가지본保家之本」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경의 저술인 『양포일록蘘圃日錄』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정약용은 '사족士族의 거가윤리居家倫理'와 관련하여 상기의 『거가사본』에 그치지 않고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주서여패朱書餘佩』와 『제경弟經』의 편찬을 새삼 권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① 『주서여패』의 경우에는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수방심收放心', '검용의檢容儀', '독서讀書', '돈효우敦孝友', '거가居家', '목족睦

한편, 정약용은 이상과 같은 '거가사본'론의 내용을 상기의 저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평소 자신의 『시문집』 및 주요 경학저술經學著述을 통해서도 주목할 만한 문제의식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거가사본'론은 대략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통례通禮」편에 실려있는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장과 내용적으로 조응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67]

① '제가'론

1

정약용은 '가족 내의 윤리적 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관련된 사족의 '제가齊家'론의 요체와 관련하여 "주자朱子는 '화순和順은 제가의 근

族', '접인接人', '처세處世', '숭절검崇節儉', '원이단遠異端'의 12 편목篇目으로 구성되도록 구상하였고(「寄兩兒」(『定本』 제4책, 264쪽). "○書名曰: '『朱書餘佩』'. ○篇目十二條, 一曰: '「立志」', 二曰: '「革舊習」', 三曰: '「收放心」', 四曰: '「檢容儀」', 五曰: '「讀書」', 六曰: '「敦孝友」', 七曰: '「居家」', 八曰: '睦族', 九曰: '「接人」', 十曰: '「處世」', 十一曰: '「崇節儉」', 十二曰: '「遠異端」'."), ② 『제경』의 경우에는 '원본原本', '기거起居', '음식飮食', '의복衣服', '언어言語', '시청視聽', '집사執事', '추공推功'의 8 문목門目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寄兩兒」(『定本』 제4책, 266쪽). "汝等欲著『弟經』, 甚善甚善. 其門目, 宜森整不亂, 試開列如左, 更加商確可也. 原本第一.【如'孝弟也者, 其爲仁之本', 須取『論』·『孟』·『庸』·『學』·『禮記』中格言十餘條, 爲之首】起居第二.【如'居不主奧, 立不中門, 疾行徐行'之類】飮食第三.【如'毋放飯, 毋絮羹'之類】衣服第四.【如'衣不帛襦袴'之類】言語第五.【如'毋勦說'之類】視聽第六.【如'不窺密'·'聽於無聲'之類】執事第七.【如'奉席請何鄕'·'進几杖·獻弓矢'之類】推功第八.【如'弟達獰狩'·'耕者讓畔'之類, 及養老·鄕飮之類】")

67)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통례通禮」편은 ① 「사당祠堂」, ② 「심의제도深衣制度」, ③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마씨거가잡의」장에는 주로 '집안에서의 각종 생활예절'이 소개되고 있는바, 즉 가장家長과 여타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일반적 책임과 역할, 부모의 봉양과 관련하여 특히 자식과 며느리가 지켜야 할 주요 예절, 각종 절기節氣와 집안 잔치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예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기본적 유의사항, 내외 노비奴婢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주인主人의 처신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주자가례』의 「통례」편의 주요내용 및 예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는 鄭一均(2001: 158~165)이 참조된다.

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효孝·제弟·자慈 및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순종하며[夫和妻順], 친척과 화목하고[睦親戚], 비복을 부리는[御婢僕] 등의 무릇 올바른 행동에 속하는 것은 의당 제가의 근본에 넣어야 한다."[68]라고 주장했던바, 이로써 그는 자신의 '제가'론의 요체로서 사족의 가족구성원 간에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을 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② 형제간의 관계, ③ 부부간의 관계, ④ 친척 간의 관계, ⑤ 주인과 노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약용은 사족의 '제가 덕목'의 근본이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바탕으로서 무엇보다 '효孝·제弟·자慈'를 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부모를 사랑하고 잘 봉양하는 것을 '효'라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제'라 하며,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을 '자'라고 한다."[69] ② 나아가 그가 보기에 고경古經—『서경집전書經集傳』의 「순전舜典」편—에서 누누이 언급되고 있는 '오전五典'과 '오교五敎'라는 것 역시 요약하면 기실 이 '효·제·자'에 지나지 않으며,[70] ③ 이는 단적으로 "인륜人倫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서의 덕德"[71]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

68)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和順, 齊家之本; …… ' …… 孝·弟·慈, 夫和妻順, 睦親戚, 御婢僕等, 凡屬行誼之類, 宜入齊家之本."

69) 「原敎」(『定本』 제2책, 200쪽). "愛養父母謂之'孝', 友於兄弟謂之'弟', 敎育其子謂之'慈', 此之謂'五敎'也."

70) 『大學公議』(『定本』 제6책, 78~79쪽). "○[議曰] …… 「堯典」曰: '愼徽五典', 曰: '敬敷五敎', 五典·五敎者,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也. 『春秋傳』史克之言, 明白如此. 然兄友·弟恭, 合言之則弟也; 父義·母慈, 合言之則慈也. 然則'孝·弟·慈'三字, 乃五敎之總括."; 『大學公議』(『定本』 제6책, 84쪽). "○[議曰] …… 舜命契曰: '百姓不親, 汝敷五敎', 五敎者, 孝·弟·慈也.【義見前】"; 「示兩兒」(『定本』 제4책, 272쪽). "五典·五敎,【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約之則孝·弟·慈也."

한편, '오전五典'과 '오교五敎'의 의미에 대한 정약용의 보다 상세한 경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정일균(2022: 106~107)이 참조된다.

71) 『論語古今注 Ⅰ』(『定本』 제8책, 59쪽). "○[駁曰] …… 德者, 篤於人倫之名, 孝·弟·慈是已. …… 德非模糊漫漶之物也."; 『孟子要義』(『定本』 제7책, 207~208쪽). "○[鏞案] …… 直心所行, 斯謂之'德'. 故『大學』以孝·弟·慈爲明德, 『論語』以讓國爲至德."; 『大學公議』(『定本』 제

둘째, 정약용은 사족의 '제가 덕목'의 하나로서 '형제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기한바 '제弟'의 덕목과 아울러 '형제 집안 간의 우애友愛와 돌봄[眷顧]'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① 그는 "형제란 나와 더불어 부모를 같이 하였으니, 이 또한 나[我]일 따름이다. 형은 먼저 태어난 나요, 아우는 뒤에 태어난 나이다. 다만 모습과 나이가 조금 다를 뿐인데, 구태여 둘로 구분하여 서로 우애하지 않으니, 이는 나로써 나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 지금 어떤 형제 몇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부귀와 호강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빈한과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서로 돌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처자만을 사사로이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바라봄에 …… 단지 대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혀를 차며 더욱 멀리하게 될 것이다. 부끄럽고도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72]라고 엄중 경계한 바 있으며, ② 또한 그는 "효孝·제弟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형제끼리 우애하는 사람쯤이야 세상에 많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는 도타운 행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백부伯父·숙부叔父로서 형제의 아들을 자기

6책, 78쪽). "明德者, 孝·弟·慈."; 『大學公議』(『定本』 제6책, 79쪽). "○[議曰] …… 所謂'明德', 孝·弟·慈也; 所謂'新民', 亦孝·弟·慈也. …… 兩節宗旨, 俱不出'孝·弟·慈'三字. 是則明明德正義也."; 『大學公議』(『定本』 제6책, 93~94쪽). "○[答曰] …… 明德者, 孝·弟·慈也. 孝·弟·慈, 原無本末. 新民, 亦弟·慈之在民者也."; 『大學公議』(『定本』 제6책, 109~110쪽). "峻德, 亦孝·弟也. …… ○[議曰] …… 則德者, 孝·弟也. …… 則峻德者, 孝·弟也. …… "; 『中庸講義補』(『定本』 제6책, 314쪽). "○[臣對曰] …… 『大學』之'明明德於天下'者, 亦只孝·弟·慈三德."; 『尙書古訓 Ⅰ』(『定本』 제11책, 125쪽). "【克明俊德】 …… ○[鏞案] …… 但此經[『書經』의 「堯典」 편: 필자 주]是'大學之道'淵源所發. '俊德'者, 孝·弟·慈之大德, '明俊德'者, 明明德也. '九族既睦'者, 以此德而齊家, 家既齊也. '百姓昭明'者, 以此德而治國, 國既治也. '萬邦於變'者, 以此德而平天下, 天下平也. 『大學』首引此經, 明其源遠也."

72) 「諭谷山鄕校勸孝文」(『定本』 제4책, 327~328쪽). "兄弟者, 與我同父母, 是亦我而已矣. 兄者, 先至之我也; 弟者, 後至之我也. 特貌與齒暫異耳, 苟分而二之, 不相友愛, 是以我疎我也. 豈非惑歟? …… 今有兄弟數人, 或豪富逸樂, 或貧賈勞苦, 而不相眷顧, 各私其妻子者, 人之視之, …… 特不敢對面, 咨嗟以離尤耳. 不愧懼哉?"

아들과 같이 여기고, 형제의 아들들이 백부숙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촌형제끼리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함에, 집에 찾아온 다른 사람이 하루를 보내고 열흘을 넘겨도 끝내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며,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이, 사대부士大夫의 집을 부지扶持해 나갈 수 있는 기상氣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3]라고 자식들에게 훈계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약용은 사족의 '제가 덕목'의 일환으로서 '부부夫婦 간의 관계'에도 각별히 유의하였다. 즉, ① 그는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순종함[夫和妻順]", 곧 부부간의 '화和·순順'이란 덕목을 "제가의 근본"[74]으로서 중시했던바, 또한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로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뜻이 한결같이 효孝에 있고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한다면 부인은 남편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시부모를 반드시 효로 봉양할 것이다. 이와

73) 「示二兒家誡」(『定本』 제4책, 30쪽). "孝·弟爲行仁之本. 然愛其父母, 友其昆弟者, 世多有之, 不足爲敦行. 唯伯·叔父, 視昆弟之子猶己子, 昆弟之子, 視伯·叔父猶親父, 從父昆弟, 相愛如同胞, 使他人來館者, 閱日踰旬, 終不知孰爲孰父, 孰爲孰子, 方纔是拂家氣象."

한편, 정약용은 동일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손님[客]이 남의 집에 가서 며칠간 머물면서도 아무 총각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이는 곧 형제간에 화목하고 품행이 있는 집안이라 하겠다(客到人家, 留數日, 不辨某卯爲某人之子, 便是兄弟和睦有行之門.)" 「示學淵家誡」(『定本』 제4책, 42쪽). "공公[權哲身: 필자 주]의 학문은 효孝·제弟·충忠·신信을 한결같이 종지宗旨로 삼아 집에 거처함에 오로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뜻을 봉양하며 친구와 형제를 한 몸처럼 아끼는 데에 힘썼으니, …… 아들과 조카들이 집안에 가득하나 마치 친형제처럼 화합함에, 그 집에 10여 일이나 한 달을 머문 뒤에야 비로소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비복婢僕과 전원田園 및 비축된 곡식을 서로 함께 사용하여 내것 네것의 구별이 조금도 없었으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길이 잘 들고 순하여 서로 싸우는 소리가 없었다(公之學, 壹以是孝·弟·忠·信爲宗旨, 居家唯順父母養志, 友昆弟如一身, 是務是力, …… 子姪羅列在前, 渾合如同胞昆弟, 留其家踰旬越月, 僅辨其孰爲某子, 婢僕·田園·穀粟之藏, 互使胥用, 漫無界別, 至於雞犬馬牛, 皆馴良善順, 無鬪猖蹄齧之聲.)" 「鹿菴權【哲身】墓誌銘」(『定本』 제3책, 233쪽).

74)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和順, 齊家之本; …… ' …… 孝·弟·慈, 夫和妻順, 睦親戚, 御婢僕等, 凡屬行誼之類, 宜入齊家之本."

같이 하여 오래가게 되면 점차 감화되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75]라고 말한 데서도 간취할 수 있듯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남편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② 그는 나아가 '열부烈婦'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 당시의 풍속에 부녀자의 자살自殺이 의義에 합당한 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남편[夫]이 죽자 아내[妻]가 따라죽는 경우, 이를 '열부'라고 칭송하면서 이를 위해 마을에 정표旌表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해주"는 일반적 행태에 대해 특히 경계·비판하는 가운데,[76] ㉡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열부'와 관련하여 "남편이 죽는 것은 한 가정의 불행이기는 하다. 혹은 시부모가 늙었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고, 혹은 여러 자녀들이 어린데 양육할 사람이 없다면, 죽은 남편의 아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슬픔을 참고 생활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위로는 봉양할 사람이 없는 시부모를 봉양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별세하면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주며, 아래로는 양육할 사람이 없는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장성한 나이가 되면 관례冠禮를 치러주고 시집과 장가를 보내주어야 옳다. …… 천하의 올바른 도리는 하나일 뿐이다. 매우 불효不孝하고 부자不慈하면서 유독 남편에 대해서만 올바른 도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77]라고 강조한 바 있다. ③ 한편, 그는 '부부유별

---

75) 「諭谷山鄕校勸孝文」(『定本』 제4책, 327쪽). "誠使婦人知其夫子之志壹於孝而不貳焉, 則欲得歡心, 不能不孝養舅姑. 及其久也, 浸染感化, 渾然天成."

76) 「烈婦論」(『定本』 제2책, 321~322쪽). "夫卒, 妻從而死, 謂之'烈', 爲之綽其楔, 丹其榜, 復其戶, …… 唯殺其身, 當於義, 是圖也."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일균(2022: 108~109)이 참조된다.

77) 「烈婦論」(『定本』 제2책, 321~322쪽). "夫卒, 妻從而死, 謂之'烈', 爲之綽其楔, 丹其榜, 復其戶, …… 唯殺其身, 當於義, 是圖也. 夫爲虎狼·盜賊所逼迫, 妻從而衛之死焉, 烈婦也. …… 夫安然以天年終于正寢之中, 而妻從而死之, 是殺其身而已, …… 是徒爲天下之凶者也, 而爲民上者, 且爲之綽其楔, 丹其榜, 復其戶, …… 是勸其民相慕效, 爲天下之凶也, 惡乎可哉? 丈夫死, 有家之不幸也. 或舅姑老, 無所養; 或諸子女幼, 無所乳育, 爲死者妻者, 當忍其哀·黽勉其生. 仰而養其無所養者, 至其死也, 爲之葬薶焉·祭祀焉; 俯而育其無所育者, 至其

夫婦有別'의 의미에 대해서도 "'부부유별'이란 각자가 그 짝을 배필로 삼고, 서로 남의 배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夫婦가 분별이 있은 뒤에야 부자父子가 친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창부娼婦의 자식은 그 아비를 알지 못한다. 만약 '(부부가 서로: 필자 주) 공경하여 서로 손님처럼 대한다'라고 한다면 부자간의 친함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78]라고 주장함으로써 부부유별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 해석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정약용은 사족의 '제가 덕목'의 하나로서 '친척親戚 간의 관계' 또한 중시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사람의 집안에는 화목한 기운이 있도록 힘써야 한다. 종족宗族이 서로 모일 때나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모름지기 흔연히 정성으로 맞이해서 며칠이라도 머무르게 하여 그들의 뜻에 만족하게 해주어야 한다."[79]라고 강조함으로써 평소 친척끼리의 '화목한 기운[和氣]'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가운데, ② "궁핍한 벗과 가난한 친척은 내게 힘입어 도움을 받도록 한다. 혹 한 해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면 힘써 두루 구휼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

長也, 爲之冠笄焉·嫁娶焉, 可也. …… 天下之道, 一而已. 未有大不孝·不慈, 獨於夫得其道者也."

한편, 정약용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재종제再從弟인 정약착丁若鑿이 신유년辛酉年[1801年, 純祖 1年]에 죽자 그의 아내인 절부節婦 최씨崔氏가 뒤따라 목매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일향의 선비들이 이들을 합장하고 난 뒤 관가에 최씨의 정절貞節과 효행孝行을 알려 표창을 받도록 의논함에 이에 정약착의 아우가 자신에게 관가에 표창을 청하는 글을 지어주기를 부탁하였는데, 그는 이를 거절하는 가운데 다만 정리상 최씨의 정절과 효행을 적은 묘지명墓誌銘만을 지어 그녀의 광중壙中에 넣도록 한 바 있다. 「節婦崔氏墓誌銘」(『定本』 제3책, 317~318쪽).

78) 「示兩兒」(『定本』 제4책, 273쪽). "'夫婦有別'者, 各配其耦, 而不相侵越也. 故曰: '夫婦別, 而後父子親.' 娼孼之子, 不知其父也. 若云: '敬, 相待如賓', 於父子親何與?"

79) 「寄兩兒」(『定本』 제4책, 270쪽). "人家務有和氣. 宗族相會, 或親賓來訪, 須歡然款接, 留連信宿, 令其滿意."

에나 살펴보아 꺼리는 기색을 띠는 일이 없어야 한다."[80]라고 훈계하는 한편, ③『거가사본』에서는 관직에서 퇴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 친척들에게 비단 3천 필을 나누어주며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범중엄范仲淹[자는 希文, 시호는 文正: 中國 北宋代의 학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81] ④ 나아가 그는 "우리 외가外家와 같은 경우는 외진 바닷가에서 살고 세상의 빈척擯斥을 받아 영록榮祿이 이르지 않음에 모두가 초췌하여 부영敷榮스럽지 못하게 되어 종가宗家의 과약寡弱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데도 개연慨然히 남의 일 보듯이 부호扶護할 방법을 꾀하지 않으면, 어찌 전복顚覆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연곡蓮谷[蓮洞의 宗家: 필자 주]이 무너지면 온 종족宗族이 어디에 의지하여 살 수 있겠는가?"[82]라고 조언했던 사례에서 잘 간취할 수 있듯이, '종족을 부지하는 방법의 요체'로서 무엇보다 종족 일반의 궁극적 의지처依支處으로서의 '종가宗家가 가진 중심적 위상과 일차적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사족의 '제가 덕목'의 한 요소로서 '주인主人과 노비奴婢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한 바 있다. 즉, ① 그는『거가사본』에서 노비 또한 사람의 자식이나 다만 돈이 없어서 부모를 떠나 주인에게 몸을 맡겼을 뿐이니 이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기한飢寒으로 고

80)「幽居論」(강진군康津郡 소장자료) "窮交冷族, 賴有沾漬. 或歲事大饑, 能出力周振. 於我乎館, 於我乎殯, 察之無難色."

한편, 이 글은 정약용의 친필 필사본으로 강진군康津郡 소장자료인데, 원제목은 '야사埜儀'로 표기되어 있으나 정민이 이 글의 내용을 참작하여 '유거론'이라 새로 이름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민(2011: 331~360, 703)이 참조된다.

8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해(2014: 131)와 박미해(2020: 67)가 참조된다.

82)「爲尹鍾文·鍾直·鍾敏贈言【字曰: '惠冠·檜仲·蒲叔', 明扶宗之義】」(『定本』 제3책, 399~400쪽). "若我外家者, 僻處海堧, 爲世所擯, 榮祿不及, 枝枝葉葉, 憔悴不敷, 而宗家之寡弱至此. 若于是, 又加以慨然越視, 不圖所以扶護之, 幾何不蹶而顚矣? …… 蓮谷旣顚, 擧族何依?"

통을 받게 하거나 함부로 가두고 매질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83] ② 동일한 취지에서 "진귀한 음식이 생기면 비록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루 나누어 종들에게까지 나누어주"[84]는 자세를 바람직한 가풍家風으로 칭송·권장하기도 하였다.

2

상기한 바대로, 정약용이 제시한 '사족의 제가 덕목'은 기본적으로 유교 일반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의 독자적인 문제의식과 입장을 반영·함축함으로써 후자의 경우와는 변별되는 유의할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 구체적 특징을 특히 '효孝'라는 대표적 덕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은 "효자孝子가 그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은 그 뜻을 잘 받드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구체口體만을 봉양하는 것을 깊이 경계하셨다."[85]라거나, "무릇 어버이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해드림과 함께 오로지 나의 정성을 다해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데에 힘써야 할 따름이다."[86]라고 강조함으로써 '효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듦[養志]'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정약용은 "(어버이께서: 필자 주) 살아계실 때의 섬김과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와 제사를 모두 예법禮法에 맞게 행하고 온갖 행실이 두루

8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해(2014: 131~132)와 박미해(2020: 67)가 참조된다.

84) 「鹿菴·權【哲身】墓誌銘」(『定本』 제3책, 233쪽). "遇有珍味, 雖所得尠少, 必銖分寸析, 惠均下賤."

85) 「諭谷山鄕校勸孝文」(『定本』 제4책, 324쪽). "孝子之養其親, 在於養志, 故聖人深以養口體爲戒."; 「寄二兒【壬戌十二月廿二日, 康津謫中】」(『定本』 제4책, 248쪽). "事親, 養志爲大."

86) 「孝子論」(『定本』 제2책, 319쪽). "凡瀡臡脂膏之養, 唯竭吾之誠以養志, 是勉耳."

갖추어져 한 가지의 흠결도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한 가지의 기행奇行이 없더라도 이는 곧 효자인 것이다."[87]라고 주장함으로써 ① 예법에 따른 정상적 봉양이 곧 '효의 요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② 당시 풍속에 효자를 칭송할 때 으레 "얼음 속에서 잉어가 솟구쳐 나오고, 눈 속에서 죽순이 돋으며, 꿩이 날아들고, 호랑이가 (여막 앞에 와서: 필자 주) 꿇어앉는 것과 같은 기적奇蹟"[88]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어버이에게 드렸다."라는 식의 기행奇行을 들먹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옛 성인聖人 가운데 순舜 임금이나 문왕文王 및 증삼曾參과 같은 분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었다."라거나 "주자朱子가 『소학小學』을 편찬하면서 이런 일은 채택하여 기록하지 않았다."[89]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특히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칫하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개입되어 거개는 "어버이를 빙자하여 명예를 훔쳐 부역賦役을 회피하고 간사한 말을 꾸며 임금을 속이는 자들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90]라고 엄히 경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효'라는 덕목과 관련하여 특히 어버이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의 '기간幾諫[은근하게 諫함]'이 중요함을 특별

87) 「諭谷山鄕校勸孝文」(『定本』 제4책, 325쪽). "若夫生事之, 死葬之祭之以禮, 百行全備, 無一缺欠者, 雖無一節之奇, 斯孝子矣."

88) 「諭谷山鄕校勸孝文」(『定本』 제4책, 325쪽). "又如冰鯉雪筍·雉投·虎跪之蹟, (此在古人, 特著靈異, 安得每有此事?)"

89) 「孝子論」(『定本』 제2책, 319쪽). "固亦有割其指·臠其膚, 以冀乎萬一之幸者. 然古之聖人, 若舜·文王·曾參之倫, 未有行之者. 魏·晉以降, 凡斷指刲股之孝, 史不絶書, 而朱子編『小學』, 不見採錄."; 「鄭孝子傳」(『定本』 제3책, 381쪽). "外史氏曰: '…… 或位隆貲高, 丐諛辭以崇飾者曰: 「雉雊于竈, 鯉躍于氷」, 可悉信哉? 雖血指·臠腓, 綽楔相望, 又非曾·閔之攸蹈也. …… '"

90) 「孝子論」(『定本』 제2책, 319~321쪽). "萬有一纖毫不直之志萌於中, 而復飾之以增衍之詞, 以求其煜煌人目者, 當何如哉? …… 是其藉父母以沽名逃役, 飾奸言以欺君者也, 不可不察."

히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가 보기에 자식이 "한 번 간諫하여 보고서는 어버이께서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마침내는 (잘못된: 필자 주) 어버이의 명령에 순종하고 만다면, 이는 어버이를 악惡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마"니, 결국은 간하는 의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어버이의 (잘못된: 필자 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신[자식: 필자 주]의 뜻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잠시 어버이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한 채 순종하며 기다림으로써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자식: 필자 주]의 뜻을 살펴 분명히 깨달으시도록 함으로써 어버이 스스로 그 (잘못된: 필자 주) 일을 그만두시게 되기를 바랄 것"[91]을 주장하였다. ② 이로써 그는 '효'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도 종래 윗사람 중심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색된 윤리관에 고착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기간幾諫의 의의'를 적극 인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인간관계로 변화·복원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② '치가'론

1

정약용은 '가계家計를 경영·유지하는 일'과 관련된 사족의 '치가治家'론의 요체와 관련하여 "주자朱子는 …… '근검勤儉은 치가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밭갈고 길쌈하는 훈계[耕織之訓], 의식衣食에 대한 경계[衣食之戒],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방법[種畜之法] 등과 같이 한결같이 전원田園에 관계되는 여러 말은 마땅히 치가의 근본에 넣어야

91) 『論語古今注 Ⅰ』(『定本』 제8책, 158~159쪽). "○[補曰] 幾諫者, 不敢直諫, 但以微意, 諷之使喩也. '見'讀作'現', 露也, 示也. 微示己志之不從親命, 且須恭敬不違親命, 以俟其自悟也. …… ○[駁曰] …… 一諫不從, 遂順親命, 陷親於惡, 安在其諫也? 孔子之意盖云: '一邊微示己志之不從, 一邊姑且順命而不違, 庶幾父母察己之志, 犂然覺悟, 自止其事也.'"

한다."[92]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치가'론은 당시 자신의 가문을 포함하여 당색黨色을 막론하고 급속히 몰락해가던 대다수 지방사족地方士族의 경제사회적 위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들의 가계경영家計經營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나름의 경세학적經世學的 고심苦心의 소산이었음은 물론이다.

첫째, 정약용은 사족의 '치가 덕목'과 관련하여 평소 무엇보다 '근勤'·'검儉'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집안을 다스리는 요체[治家之要]로는 명심할 두 글자가 있으니, 첫째는 '근勤'이요, 둘째는 '검儉'이다."[93]라거나 "나는 전원田園을 너희들[정약용의 두 아들: 필자 주]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벼슬은 하지 않았다만, 오직 두 글자의 신부神符가 있어 생업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이제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라. 한 글자는 '근勤'이요, 또 한 글자는 '검儉'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사용해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 사군자士君子가 집안을 거느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御家律身之法]으로 이 두 글자를 버리고는 착수할 곳이 없을 것이다."[94]라고 거듭 강조했던 바, 이로써 그는 특히 지방에 유락流落한 가난한 사족이 '가계家計를 유지하는 비결'로서 무엇보다 '근勤'·'검儉'이란 두 가지 덕목을 적시한 바 있다. ② 나아가 그는 ㉠ 상기한바 '근'·'검'이란 두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집안을 거느리는 법[御家之法]은 위로는 바

92)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 勤儉, 治家之本; ……' …… 若耕織之訓, 衣食之戒, 種畜之法, 一應田園諸說, 當入治家之本."

93) 「爲尹輪卿贈言」(『定本』 제4책, 24쪽). "治家之要, 有二字銘, 一曰: '勤', 二曰: '儉'."

94) 「又示二子家誡」(『定本』 제4책, 34~35쪽). "余無宦業可以田園遺汝等, 唯有二字神符, 足以厚生·救貧, 今以遺汝等, 汝等勿以爲薄. 一字曰: '勤', 又一字曰: '儉'. 此二字勝如量田·美土, 一生需用不盡. …… 士君子御家·律身之法, 捨此二字, 無可著手處也."

깥주인과 안주인으로부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형과 아우, 동서同婿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노비奴婢의 자식에 미치기까지, 무릇 5세 이상만 되면 각자 할 일을 나누어주어 한 시각이라도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그런즉 가난과 군색함을 근심하지 않게 될 것"[95]임을 역설하는 한편, ㉡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아내가 게으른 것은 가산家産을 탕진할 근본"이라 경계하는 가운데, 특히 부인의 직분으로 "잠실蠶室 3칸을 짓고 잠박蠶箔을 7층으로 하여 모두 21칸의 누에를 기를 것"과 함께 "별도로 삼과 모시를 심어 아내에게 봄과 여름에는 명주를 짜고 가을과 겨울에는 베를 짜도록 하"[96]여 "부녀자들도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97]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③ 한편, 그는 『거가사본』에서도 근검勤儉을 실천했던 모범적인 역사적 인물로 범중엄과 왕안석王安石[호는 半山, 시호는 文: 中國 北宋代의 학자]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근검한 이유로는 넉넉하여 다 쓰지 못한 솜씨[巧]는 남겨 하늘에 돌려주고, 넉넉하여 다 쓰지 못한 녹祿은 남겨 조정에 돌려주며, 넉넉하여 다 쓰지 못한 재물[財]은 남겨 백성에게 돌려주고, 넉넉하여 다 쓰지 못한 복福은 남겨 자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훈계하기도 하였다.[98]

둘째, 정약용은 사족의 '치가의 방편'과 관련하여 당시 지방에 유락한 가난한 사족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서 무엇보다 '상업적 농업경영'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인정·주장한 바 있다. 즉, ① 그

95) 「贐學游家誡」(『定本』 제4책, 39쪽). "御家之法, 上自主翁·主母, 以至男女·長幼·昆季·妯娌之倫, 下逮奴婢之雛, 凡過五歲以上, 各有職業分授, 無一刻游息, 則不患其貧窘也."

96) 「爲尹輪卿贈言」(『定本』 제4책, 23쪽). "妻懶者, 敗家之本. …… 別構蠶室四五間, …… 爲箔七層, …… 別種蔴苧, 令妻春夏治絲, 秋冬績布."

97) 「示學淵家誡」(『定本』 제4책, 44쪽). "其次爲蠶室三間, 爲箔七層, 共養蠶二十一間, 令婦女無至游食."

9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해(2014: 133)와 박미해(2020: 68)가 참조된다.

는 "조정朝廷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사士'라 이르고, 들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농農'이라 이른다. 귀족貴族의 후예로서 먼 지방에 유락流落하여 몇 대 이후까지 벼슬이 마침내 끊기면, 오직 농사農事를 지어야만 노인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사란 천하에 이익이 박한 것이다. 겸하여 근세에는 전역田役이 날로 무거워져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더욱 쇠잔하게 만드니, 모름지기 원포園圃를 가꾸어 보충을 해야만 거의 유지할 수 있"[99]으며, 특히 "가난한 사족이 산업産業을 경영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100]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으며, ② 나아가 그는 사족의 '상업적 농업경영'의 구체적 내용으로 특히 '원포園圃의 경영'과 '양잠養蠶'을 일관되게 중시·강조한 바 있다. ㉠ 우선 '원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진귀한 과일나무를 심은 곳을 '원園'이라 하고, 맛 좋은 채소를 심은 곳을 '포圃'라 한다. 다만 집에서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시장市場에 내다팔아 돈을 만들기 위한 것"[101]으로서, 이에 "생활의 수단[治生之術]으로는 원포園圃와 목축牧畜만한 것이 없다."[102]라거나, "향리鄕里에 살면서 원포園圃를 가꾸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 씀씀이를 절약하고 농사에 힘쓰면서 겸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103]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으며, ㉡ 또한 '양잠'과 관련해서도 "살림살이를 꾀하는 방법

99) 「又爲尹惠冠贈言」(『定本』 제4책, 21쪽). "仕於朝者, 謂之'士'; 耕於野者, 謂之'農'. 貴族遺裔, 流落遐遠, 數世以後, 簪組遂絶, 唯有農事, 足以養老慈幼. 然農者, 天下之拙利也. 兼之近世, 田役日重, 廣作彌令凋敗, 須補之以園圃, 庶幾焉."

100) 「爲尹惠冠贈言」(『定本』 제4책, 20쪽). "貧士慮營産業, 勢也."

101) 「又爲尹惠冠贈言」(『定本』 제4책, 21쪽). "樹之珍果, 謂之'園'; 藝之佳蔬, 謂之'圃'. 不唯家食是圖, 將粥之爲貨."

102) 「爲尹輪卿贈言」(『定本』 제4책, 22~23쪽). "治生之術, 莫如園圃·畜牧."

103) 「寄兩兒」(『定本』 제4책, 261쪽). "居鄕不治園圃, 天下之棄也. …… 節用而務本, 兼之得美名者, 此事也."

[謀生之術]에 대하여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뽕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제야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지혜보다 더 위에 갈 것이 없음을 알았다. 과일을 파는 일은 본래 깨끗한 명성을 잃지는 않지만 장사하는 일에 가까우나, 뽕나무를 심는 것이야 선비의 명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큰 장사꾼의 이익에 해당하니, 천하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겠느냐? …… 그 다음으로는 잠실 3칸을 짓고 잠박을 7층으로 하여 모두 21칸의 누에를 길러 부녀자婦女子들도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좋은 방법"[104]이라거나 "더하여 형상荊桑·노상魯桑 등의 뽕나무를 모름지기 수천 주株를 심고 별도로 3칸 잠실을 짓고 7층 잠박을 설치해서 아내로 하여금 부지런히 누에를 기르도록 해라. 이렇게 몇 해만 하면 식량·소금·식초·육장 등을 마련함에 의당 남편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을 것"[105]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③ 이로써 그는 결론적으로 "한번 작록爵祿의 계통系統을 잃은 사대부가士大夫家"가 의당 모색해야 할 "의식衣食의 근원으로는 오직 뽕나무와 삼[麻]을 심고 채소와 과일을 기르는 것과 부녀자들이 방적紡績에 힘쓰는 것"[106]에 있을 뿐이요, 나아가 "가난한 사족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로는 "사방으로 길이 통하는 읍과 큰 도회지 곁에 진귀한 과일나무 10주를 가꾸면 한 해에 엽전 50꿰미를 얻을 수 있고, 맛있는 채소 몇 두둑을 심으면 1년에 엽전 20꿰미를 얻을 수 있으며, 뽕나무 40~50주를 심어 5~6칸의 누에를 길러내면

104) 「示學淵家誡」(『定本』 제4책, 44쪽). "謀生之術, 晝思夜度, 莫善於種桑, 始知孔明之智, 果無上也. 賣果本是淸名, 猶近商賈, 若桑不失儒者之名, 而抵大估之利, 天下復有此事哉? …… 其次爲蠶室三間, 爲箔七層, 共養蠶二十一間, 令婦女無至游食, 亦佳法也."

105) 「爲尹惠冠贈言」(『定本』 제4책, 20쪽). "復種荊桑·魯桑, 須至數千株, 別構蠶室三間, 爲箔七層, 令室妻勤養之. 行之數年, 米·鹽·醯·醬之具, 當不煩夫子也."

106) 「示學淵家誡」(『定本』 제4책, 41~42쪽). "士大夫之家, 一失爵祿之系, …… 且如衣食之源, 唯種桑麻·蒔蔬果, 婦女勤於紡績, 差可爲耳."

또한 30꿰미의 엽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해마다 1백 꿰미의 엽전을 얻는다면 기한飢寒을 구제하기에 충분할 것"[107]임에 거듭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2

정약용이 사족의 '치가의 방편'으로 제시한바 상기의 '상업적 농업경영'론에는 그 내용적 특징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의할 만한 전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그는 사족의 '명분名分 없는 가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태사공太史公은 '늘 빈천貧賤하면서 인의仁義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공자孔子의 문하에서는 재리財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나 자공子贛은 재산을 늘렸다. 지금 소부巢父나 허유許由와 같은 절개節槪도 없으면서 몸을 누추한 오막살이에 감추고 명아주나 비름의 껍질로 배를 채우면서 부모와 처자식을 추위에 떨며 굶주리게 만들고 벗이 찾아와도 술 한 잔 권할 수 없으며, 명절에도 처마 끝에 고기가 걸린 것이 보이지 않고 유독 공사公私 간 빚 독촉하는 자만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다면 이는 천하에 가장 졸렬한 것으로서 지혜로운 사족은 피하는 일"[108]이라 엄히 경계한 바 있다.

둘째, 정약용은 가난한 사족이 자신의 가계경영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품商品·시장경제市場經濟의 발달發達'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제한적

107) 「寄兩兒」(『定本』 제4책, 261쪽). "通邑·大都之側, 珍果十株, 歲可得五十串; 佳蔬數畦, 歲可收二十串; 若兼種桑四五十株, 養蠶五六間, 亦三十串之物也. 得每年百串, 足以救飢寒. 此貧士所宜知也."

108) 「爲尹輪卿贈言」(『定本』 제4책, 21~22쪽). "太史公曰: '長貧賤, 好語仁義, 亦足羞也.' 聖門恥言財利, 然子贛貨殖. 今無巢父許由之節, 而薙身蓬藋之中, 圍腸藜莧之外, 凍餒其爺娘妻孥, 友來不能勸一杯, 歲時檐角, 不見有縣肉, 唯公私徵欠者, 打門叱喝, 此天下之至拙也, 智士避焉."

으로 활용할 것, 다시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사족의 '깨끗한 명성'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포농업園圃農業과 양잠에 종사운영할 것을 권장했을 뿐이지, 결코 사족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상업商業(적 농업)에 뛰어들도록 권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09]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약용의 상기 주장은 여전히 '도덕경제道德經濟'의 관점을 확고히 전제·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③ '기가'론

정약용은 '가문의 문벌門閥을 제고·유지하는 일'과 관련된 사족의 '기가起家'론의 요체와 관련하여 "주자朱子는 …… '독서讀書는 기가의 근본

109) 정약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돈 궤짝을 들고 포구浦口에 나가 앉아 먼 섬에서 오는 배를 기다려 무지한 어민漁民과 입이 닳도록 싸워 몇 푼의 이익을 남기려 하고, 남의 것을 깎아 자기의 이익을 더하려고 근거 없는 소리로 떠들썩하게 속이며, 눈을 부라리며 마치 억울함이 쌓여 성이 난 것처럼 연기하는 것 또한 천하에 가장 졸렬한 짓이다. 아니면 이잣돈을 놓아 사방 이웃의 고혈을 빠는 짓을 하면서 어쩌다가 약속한 날짜를 어기면 약하고 불쌍한 백성을 잡아다가 말 매는 말뚝에 매달아 놓고 수염도 뽑고 종아리도 두들기게 되면, 온 고을에서 범이나 이리라고 호칭하며 육친六親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재화를 구릉丘陵과 같이 얻는다 해도 한 세대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그 자손 가운데 미치광이 광증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그 재산을 뒤엎기 때문이다. 하늘의 법망法網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으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持錢櫃, 坐浦口, 伺遠島船來, 與魚蠻子苦口力爭, 冀錐刀之末得, 刻人以傅己, 撒謊哄騙, 眸子突露, 如鬱壘怒瞋, 斯亦天下之至拙. 不然, 放子母錢, 唆取四鄰膏血, 或期程有差, 搾取厄羸罷匄, 縣之馬枊, 拔其鬢毛, 擊其脛踝, 一鄉號爲虎狼, 六親疾如仇敵. 如是者, 雖得貨如丘陵, 不能保一世. 必其子姓有瘋邪癲狂·甘酒嗜色者, 出而覆之. 天網恢恢, 疏而不漏, 甚可懼也.)" 「爲尹輪卿贈言」(『定本』 제4책, 22쪽). "그외 이잣돈 놀이나 여러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약藥을 파는 일 등은 모두가 가장 악착스러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풍미風味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전本錢을 까먹고 본업本業까지 상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일절 단념해야 할 것이다.(餘如放子母錢, 販買諸物, 及爲賣藥等事, 皆一等齷齪人所能爲, 稍有風味者, 未有不消折本錢喪其本業者, 切須斷念.)" 「示學淵家誡」(『定本』 제4책, 42쪽).

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뜻을 세우고 학문에 정진함[立志向學], 악惡을 제거하고 선善으로 나아감[去惡趣善] 및 격물궁리格物窮理와 같은 것에서부터 책을 소장所藏하고 초록抄錄하며 책을 좋아하고 아끼는 일에 이르는 말은 마땅히 기가의 근본에 넣어야 한다."[110]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약용의 이러한 '기가'론은 특히 강진의 유배지에서 어느덧 '폐족廢族'으로 전락하고 만 자신의 가문의 중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려는 애타는 문제의식이 그 직접적 동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첫째, 정약용은 사족의 '기가 덕목'의 근본이자 특히 폐족의 처지를 극복하는 첩경으로서 무엇보다 '독서讀書'를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오직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聖賢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百姓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鬼神의 정상情狀에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모유謨猷를 도울 수 있으며,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초월하고 큰 우주宇宙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바야흐로 우리 인간이 행할 본분"[111]이라는 전제하에, ② "너희들[정약용의 두 아들: 필자 주]은 지금 폐족廢族인데, …… 폐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오직 독서 한 가지 일뿐이다. 독서는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로서, 호사스러운 부호가의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으며, 궁벽한 시골의 수재秀才 또한 그 오묘한 이치를 엿볼 수 없다. 반드시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으며, 중년에 너희들처럼 재난을

110)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 讀書, 起家之本; ……' …… 若立志向學, 去惡趣善, 及格物窮理, 以至藏書·鈔書·嗜書·愛書之說, 當入起家之本."

111) 「爲尹惠冠贈言」(『定本』 제4책, 21쪽). "唯有讀書一事, 上足以追配聖賢, 下足以永詔烝黎; 幽達鬼神之情狀, 明贊王霸之謨猷; 超越禽蟲之類, 撐柱宇宙之大, 此方是吾人本分."

만난 자라야 비로소 독서할 수 있는 것이다."[112]라고 격려한 바 있다.

둘째, 정약용은 사족의 '기가 덕목'의 일환으로서 상기한바 '독서'와 함께 '학문學問' 또한 공히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독서에는 반드시 먼저 근기根基를 세워야 한다. 무엇을 근기라 하는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나니, …… 학문이 이미 몸에 충분히 배게 되면 독서는 따로 그 층절層節을 논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학문에 뜻을 둠[志于學]'을 독서를 위한 전제로서 강조하는 가운데, ② 그는 "폐족으로서 문자文字를 하지 않고 예의禮義가 없다면 더욱이 어떻게 되겠느냐? 모름지기 보통 사람보다 백 배의 공력을 기울여야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이다. …… 청족淸族일 때는 문자를 하지 않아도 혼인婚姻할 수 있고 군역軍役도 면할 수 있거니와, 폐족이 되어서 문자를 하지 않는다면 의당 어떻게 되겠느냐? 문자는 그래도 여사餘事에 속하거니와, 학문을 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느냐? 폐족 중에 왕왕 기재奇才들이 많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科擧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절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경전經傳에 마음을 기울여 책 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빈다."[113]라거나, "폐족으로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패려悖戾하고 비루하여 가까이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세상의 버림을 받게 된다. 혼인길이 막혀서 천류賤流와 장가들고 시집가게 될 것이요, 한두 대가 지나 물고기의 입이나 강아지의 이마를

112) 「寄二兒【壬戌十二月廿二日, 康津謫中】」(『定本』 제4책, 245쪽). "汝今廢族, …… 何謂因其廢而善處之? 唯讀書一事是已. 讀書是人間第一件淸事, 不許綺紈子弟知味, 又不許草茅村秀才窺閫奧. 必也以仕宦家子弟, 弱歲有聞見, 中歲遭罹如汝輩者, 方可讀書."

113) 「答二兒【以下康津謫中書】」(『定本』 제4책, 243쪽). "廢族而不文無禮, 尤當如何? 比凡人須加百倍之功, 纔得數作人類耳. …… 淸族時, 雖不文, 可以爲姻聯, 可以免軍役, 廢族而不文, 當何如耶? 文猶餘事, 不學無禮, 去禽獸幾何? 廢族往往多奇才, 此無他, 不爲科擧所累而然, 切勿以不赴科自沮, 劬心經傳, 無使讀書種子隨絶, 懇乞懇乞."

한 자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집안은 마침내 끝장나는 것이다."[114]라고 두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경계한 바 있다. ③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또한 "만약 내가 몇 년 안에 사면赦免되어 돌아간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몸가짐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효제孝弟를 숭상하고 돈독하고 화목한 기풍을 일으키며, 경사經史를 연구하고 시례詩禮를 담론談論하도록 하겠다. …… 이렇게 한즉 비록 '폐족'이라 하여도 또한 장차 안목을 갖춘 이들이 흠모하는 바가 될 것이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도록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시 집안이 중흥中興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여라. 차마 이를 하지 않으려느냐?"[115]라고 간절히 권유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이처럼 그가 특히 폐족의 처지를 극복하는 첩경으로서 강조한바 학문의 바탕에는 "학문의 종지宗旨란 효제孝弟로써 근본을 삼고 예악禮樂으로써 문식을 내며, 정형政刑으로써 보충하고 병농兵農으로써 우익을 삼아야 한다."[116]라는 나름의 독자적인 학문관이 전제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정약용은 사족의 '기가 덕목'의 하나이자 상기한바 '독서와 학문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두 아들에게 '초서鈔書'를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① 그는 상기한 바대로 특별히 '사족의 거가윤리居家倫理'의 함양 및 실천과 관련하여 두 아들에게 『거가사본居家四本』, 『주서여패朱書餘佩』, 『제경弟經』 등의 편찬을 거듭 권유한 바 있으며, ② 나

114) 「寄兩兒【癸亥元日】」(『定本』 제4책, 262~263쪽). "廢族而不學, 遂爲悖戾鄙穢不可近之物, 爲世所棄. 婚姻不通, 而嫁娶及於賤流, 一傳而有魚吻犬顙之子出焉, 則家遂不可問矣."

115) 「寄兩兒【癸亥元日】」(『定本』 제4책, 263쪽). "使我而得數年間赦還, 使汝輩而能飭躬礪行, 崇孝弟·風敦睦, 研窮經史, 談論詩禮. …… 則雖曰'廢族', 亦將爲具眼人所豔慕. 一年二年, 水雲漸邈, 有如是而不中興者乎? 汝其思之, 汝其思之. 忍而不爲是耶?"

116) 「答二兒【以下康津謫中書】」(『定本』 제4책, 244쪽). "學問宗旨, 本之以孝弟, 文之以禮樂, 輔之以政刑, 翼之以兵農.【賦役·貨財, 皆此門】"

아가 그는 "초서의 요지要旨는 무릇 한 종류의 책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로서 『소학小學』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소학』을 이을 만한 것이 있으면 뽑고, 모든 경설經說에 새로운 것으로서 전거典據가 있는 것은 뽑고,【『예경禮經』도 마찬가지이다】 자학字學이나 운학韻學과 같은 종류는 열 개 중에 하나만 뽑아야 한다. 가령 『설령說鈴』 가운데 「유구기정琉球紀程」[「오끼나와 기행문」: 필자 주] 같은 것은 의당 병학兵學이 될 것이니 뽑아야 하며, 무릇 농사農事나 의술醫術 등에 관한 제설諸說은 먼저 집안에 있는 서적을 고찰하여 새로운 학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뽑도록 하여라."[117]라거나 "오로지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예기禮記』,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은 마땅히 숙독해야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뜻을 강구講究하고 고찰하여 그 정밀한 뜻을 얻으면 생각한 바를 따라 곧바로 차록箚錄해야만 바야흐로 실득實得이 있게 된다."[118]라고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사족의 '기가 덕목'의 일환이자 '문화文華의 안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유교경전儒敎經典을 위시하여 각종의 실용서實用書와 예술서藝術書 및 시집詩集 등 수천 권의 서적을 소장하며 또한 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평소 사족의 이상적 삶의 한 요건으로서 "방안에는 서가書架 두 개를 설치하고 천삼사백 권의 책을 꽂아두되, 『주역집해周易集解』·『모시소毛詩疏』·『삼례원위三禮源委』와 고서古書·명화名畫·산경山經·지지地志 및 성력星曆의 법칙,

117) 「答二兒【以下康津謫中書】」(『定本』 제4책, 244~245쪽). "鈔書要旨, 凡看一種書, 有嘉言·善行之不載『小學』, 而可爲『小學』之續者採之, 凡經說之新而有據者採之,【『禮經』同】 如字學·韻學之類, 十採其一. 假如『說鈴』中「琉球紀程」之類, 當爲兵學而採之, 凡有農醫諸說, 先考家中所有書籍, 知其新說, 然後鈔之."

118) 「爲盤山·丁修七贈言【字乃則, 長興人】」(『定本』 제3책, 396쪽). "唯『易』·『書』·『詩』·『禮』·『論』·『孟』等, 當熟讀. 然須講究考索, 得其精義, 隨所思, 卽行箚錄, 方有實得."

의약醫藥의 설명, 진련陳練[陣法과 軍事訓鍊: 필자 주]의 제도, 군자軍資[軍需物資: 필자 주]의 법식과 초목草木·금어禽魚의 계보, 농정農政·수리水利의 학설이라든가 기보棊譜·금보琴譜 등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한다. 책상 위에는 『논어論語』 한 권을 펴놓고, 곁에는 화리목花梨木 탁자를 두고 도잠陶潛·사영운謝靈運·두보杜甫·한유韓愈·소식蘇軾·육유陸游의 시詩와 『중주악부中州樂府』·『열조시집列朝詩集』 등 몇 질帙을 올려놓는"[119] 일을 꿈꾼 바 있으며, ② 한편, 그는 『거가사본』에서도 애서가愛書家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서 유기원劉幾苑의 처, 육유陸游[호는 放翁: 中國 宋代의 문장가], 맹경익孟景翌 및 조평모曹平慕의 경우를 들고 있다.[120]

④ '보가'론

정약용은 '가문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일'과 관련된 사족의 '보가保家'론의 요체와 관련하여 "주자朱子는 …… '순리循理는 보가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음덕陰德을 베풀고 분노忿怒를 징계함[樹陰德·徵忿怒], 분수分數를 지키고 곤궁困窮에 굳세게 대처함[安分固窮], 일[事]을 잘 처리하고 사물[物]에 대응함[處事應物], 천명天命을 즐겁게 여기고 아는 일[樂天知命]과 같이 사욕私欲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일[遏私欲·存天理]에 관계되는 모든 말은 마땅히 보가의 근본에 넣어야 한

119) 「題『黃裳幽人帖』」(『定本』 제3책, 173~174쪽). "余曰: '…… 室中置書架二部, 插架書一千三四百卷, 『周易集解』·『毛詩疏』·『三禮源委』, 及古書·名畫·山經·地志·星曆之法·醫藥之詮·陳練之制·軍資之式, 及草木禽魚之譜·農政水利之說, 以至棊譜·琴譜之等, 無所不具. 案上展『論語』一卷, 旁有花梨几子, 安陶·謝·杜·韓·蘇·陸之詩, 及『中州樂府』·『列朝詩集』等數帙. ……'"

1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해(2014: 139)와 박미해(2020: 70)가 참조된다.

다."[121]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첫째, 정약용은 사족의 '보가 덕목'의 근본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한 평생 선행善行을 쌓음으로써 수신修身에 힘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평소 "거처함에 공손하고 일처리에 공경하며,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의 행실에 빠뜨림이 없게 할"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② 나아가 "길례吉禮나 흉례凶禮 같은 큰 예禮는 사방에서 법法을 취"하며, 또한 "겸손하게 낮추어 스스로를 기르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뜻이 없도록 하고, 근勤·검儉으로 도道를 지켜 자손이 우러러보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오래도록 그 복福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122]라고 훈계한 바 있다. ③ 한편, 그는 『거가사본』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실천했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손숙오孫叔敖[본성명은 蔿敖, 자는 孫叔: 中國 春秋時代의 관료]와 사마광司馬光[자는 君實, 시호는 文正: 中國 北宋代의 학자관료]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123]

둘째, 정약용은 사족의 '보가 덕목'의 일환으로서 평소 가난한 친척이나 궁핍한 벗에게 음덕을 베풀 것 또한 역설하기도 하였다. 즉, ① 그는 "궁핍한 벗과 가난한 친척은 내게 힘입어 도움을 받도록 한다. 혹 한 해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면 힘써 두루 구휼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살펴보아 꺼리는 기색을 띠는 일이 없어야 한다."[124]라고 강조하는 한편, ② 그는 특히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편지

121) 「寄兩兒」(『定本』 제4책, 267쪽). "朱子曰: '…… 循理, 保家之本; …… ' …… 若樹陰德·徵忿怒, 安分固窮, 處事應物, 樂天知命, 一切遏私欲·存天理之說, 當入保家之本."

122) 「幽居論」(강진군康津郡 소장자료) "昔東平王·蒼曰: '爲善最樂.' 若于此中, 不積善行, 德亦何足愉也? 居處恭·執事敬, 孝·友·睦·婣·任·恤之行, 靡有缺闕. 吉·凶大禮, 四方取以爲法. …… 謙謙自牧, 無陵轢上人之意. 勤·儉守道, 以爲子孫贍. 如是則可以久保其福也."

1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해(2014: 141~142)와 박미해(2020: 70~71)가 참조된다.

124) 「幽居論」(강진군康津郡 소장자료) "窮交冷族, 賴有沾漬. 或歲事大饑, 能出力周振. 於我乎館, 於我乎殯, 察之無難色."

에서 매번 '일가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세가 기구함을 구당瞿唐의 염예灩澦[瞿唐峽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암석: 필자 주]라 하기도 하고 태행太行의 양장羊腸[太行山에 있는 구불구불한 險路: 필자 주]이라 하기도 하며 한탄하는데, 이 모두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말뿐이니, 이는 큰 병통이다. ……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곡식을 주어 구제한 적이 있느냐? 눈 속에서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땔나무 한 묶음을 나누어주어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약간의 돈으로 약을 지어주어 일어나게 한 적이 있느냐? 늙고 곤궁한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때때로 찾아 뵙고 공손히 존경심을 표시한 적이 있느냐? 우환憂患이 있는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하는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와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몇 가지 일들을 너희들은 행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러 집안에서 너희들의 급박하고 어려운 일에 서둘러 돌봐주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125]라고 엄중히 경계함으로써 평소 일가친척에게 음덕을 베풂이

한편, 정약용은 동일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세간의 의식衣食의 자료나 재화財貨의 물품은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옷은 해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며, 자손에게 전해준 것은 끝내 탕진되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오직 가난한 친척이나 궁핍한 벗에게 나누어주는 것만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 형체形體가 있는 것은 파괴되기 쉽지만, 형체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다. 자기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체로 사용하는 것이요,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정신精神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몸이 형체가 있는 것을 누리면 해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지만, 정신이 형체가 없는 것을 누리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世間衣食之需, 財貨之物, 皆幻妄空花. 服之則敝, 餌之則腐, 傳之子孫則終歸蕩散. 唯散與冷族貧交者, 永久不滅. …… 有形者易壞, 無形者難滅. 自用其財者, 用之以形; 以財施人者, 用之以神. 形享以形, 期於敝壞; 神享以無形, 不受變滅也.)" 「示二子家誡」(『定本』 제4책, 33쪽).

125) 「寄兩兒」(『定本』 제4책, 258~259쪽). "汝輩書中, 每云: '一家親戚, 無人顧恤', 或稱瞿唐灩澦, 或稱太行羊腸, 此都是怨天尤人底口氣, 此大病痛. …… 諸家有連日未炊者, 汝能出些

기실 자신의 집안이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비결이 됨을 훈계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사족의 '보가 덕목'의 종결이자 특히 '보가를 위한 최고의 이상적 계책'으로서 특히 '청복淸福'을 누리는 '유인幽人의 삶'을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이러한 '유인의 삶'이란 단적으로 전원田園에 은둔隱遯하여 과일과 채소를 기르면서 천명天命에 순응하고 대도大道를 행하며 천작天爵을 즐거워하는 '은사隱士의 삶'이 바로 그것임[126]을 강조하는 가운데, ② 또한 그는 "생각건대 하늘은 청복을 매우 아껴 왕후王侯·장상將相의 귀貴와 도주陶朱[중국 월越나라의 범여范蠡의 별명: 필자 주]의 돈猗頓[중국 노魯나라의 대부호: 필자 주]의 부富는 세상에 썩은 흙처럼 널려 있으나, (『周易』의: 필자 주) 「이괘履卦」 구이九二의 길吉[幽人의 삶: 필자 주]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알려진 일이 없다."[127]라고 역설한 바 있다.

3. 정약용의 '가례'론에 나타난 '예의 정신'

이상에서 일별한 바대로, 정약용은 한평생 자신의 『시문집詩文集』과

米粒以療之否? 積雪凍僵, 汝能分一條薪以溫之否? 有病而須服藥者, 汝能取一二錢方藥以起之否? 有老而窮者, 汝能時時往拜, 斂膝侍坐, 溫恭致敬否? 有所憂患, 汝能色勃然目瞿然, 肯與之分其憂愁之苦, 而議其所以善處否? 於玆數者, 汝不能焉, 又何爲望諸家之遑遑然汲汲然, 趨汝之急而赴汝之難哉?"

126) 「題『黃裳幽人帖』」(『定本』 제3책, 173쪽). "在『周易』「履」之「无妄」曰: '幽人, 貞吉.' 余釋之曰: '艮山之下, 震林之間, 巽以隱遯, 仰順天命, 或蒔艮菓, 或種震菜, 履大道而坦坦, 樂天爵以熙熙, 此碩人之寬也.' 幽人之事, 不已吉乎!"

127) 「題『黃裳幽人帖』」(『定本』 제3책, 173쪽). "顧天甚惜淸福, 王侯將相之貴, 陶朱猗頓之富, 散之如糞土, 而「履」九二之吉, 世無聞焉."

일련의 방대한 경학經學 및 예학禮學 관계저술을 통해 사족士族의 '가례家禮'론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문제의식과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

1) '가례'론의 철학적 기반: '예'의 개념

한편, 정약용은 일찍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禮'론을 정립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상기한바 사족의 '가례'론 및 방대한 예학체계禮學體系를 구성하는 출발점이자 철학적 기반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가 주장한바 '예'론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8]

첫째, 정약용은 '제도制度와 품절品節'로 구현된 바로서의 '예'란 기본적으로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정人情에 합하는 바"를 성인聖人께서 절도 있게 하고 문식文飾하여 제정한 것[129]으로 보았던바, 이에 그 실상이

---

128) 정약용의 '예'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일균(2021b: 305~312)이 참조된다.

129) 「『喪禮四箋』序」(『定本』 제2책, 393쪽). "禮者, 天地之情, 本於天叙於地, 而禮行於其間. 禮者, 天地之情, 聖人特於是爲之節文焉已."; 「『邦禮艸本』序」(『定本』 제2책, 399쪽). "揆諸天理而合, 錯諸人情而協者, 謂之'禮'."; 『喪禮四箋 Ⅲ』, 「喪期別 5」(『定本』 제20책, 62쪽). "○[鏞案] …… 聖人制禮, 皆順天理而合人情."; 『喪禮四箋 Ⅲ』, 「喪期別 8」(『定本』 제20책, 123쪽). "○[鏞案] 義有不通, 行有窒礙者, 聖人不以爲禮也."; 『喪禮四箋 Ⅲ』, 「喪期別 4」(『定本』 제20책, 31쪽). "○[鏞案] …… 此法本出於天子·諸侯之家, 三代以來, 未之或改, 合於天經, 協於人紀, 不可以變易者也."; 『喪禮四箋 Ⅲ』, 「喪期別 7」(『定本』 제20책, 103쪽). "○[鏞案] …… 傷天地之正理, 而可爲禮乎?"; 『喪禮四箋 Ⅲ』, 「喪期別 10」(『定本』 제20책, 188쪽). "○[鏞案] …… 且禮者, 緣情而起者也."; 『喪禮外編』, 「檀弓箴誤 2」(『定本』 제21책, 70쪽). "○[箴曰] …… ○…… 古聖人精義妙旨, 孝子慈孫惻怛至切之意, 皆寓於此等禮節, 不可以不知也.; 『喪禮外編』, 「檀弓箴誤 3」(『定本』 제21책, 86쪽). "○[箴曰]…… 蓋以訃於君, 則主人親命之; 訃於親戚·僚友, 則父兄分命之, 亦天理·人情之自然也."; 『喪禮外編』, 「檀弓箴誤 6」(『定本』 제21책, 164쪽). "○[箴曰] 曾子之七日不食, 出於自然之天性, 故不自知其爲過.【以語子思, 見上篇】"; 『喪禮外編』, 「古禮零言 1」(『定本』 제21책, 200쪽). "吾觀三代之禮, 皆揆諸天理而合, 錯諸人倫而正.";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41~242쪽). "○[鏞案] 禮者, 所以別嫌疑·定親疏, 以之協天理而順人情者也. …… 疏者以

란 곧 '인仁·의義[孝·弟]를 절도 있게 하고 문식하는 것'[130]으로서, 이는 결국 '효孝·제弟·충忠·신信을 실행하는 규칙'[131]으로 구현되었다.

둘째, 정약용은 이처럼 '제도와 품절'로 구현된 '예'란 '미시적인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확대·관철된다고 보았다. 즉, ①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란 ㉠ 기본적으로 "외면外面을 절제하고, …… 이러한 절제를 통해 행동을 제어하"[132]며, 나아가 '상하上下의 지위地位와 친소親疏를 결정하고 혐의嫌疑를 구별'하는 기능을

親, 親者以疏, 薄者以厚, 厚者以薄, 則乖天理而拂人情, 未有甚於是者. 故先聖制禮, 立大經·陳大紀, 爲簡嚴不易之法, 以昭示萬世.";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55쪽). "主人曰: '…… 聖人制禮, 實本乎天理·人情, 則上自帝王, 下至委巷, 宜無異同. …… '"; 『喪禮外編』, 「國朝典禮考 1」(『定本』 제21책, 284쪽). "[臣謹案] …… 聖人者制禮立名, 必深思·靜究, 期使之博通·無礙. 凡窒而不通, 行而有窮者, 非聖人之法也."; 『喪禮外編』, 「國朝典禮考 1」(『定本』 제21책, 294쪽). "[臣謹案] …… 誠以不稱'父'·不稱'考', 其在天理·人情, 終有不能安者, 故其驗如是也."; 『喪禮外編』, 「國朝典禮考 2」(『定本』 제21책, 311쪽). "[臣謹案] …… '皇伯'之稱, 揆之天理而不然, 揣之人情而不協."; 『喪儀節要』, 「禮書箚記」(『定本』 제22책, 148쪽). "蓋親始死, 失聲啼哭, 未暇爲位, 旣正尸, 始整頓位次, 此所謂'天理之節文'也."; 『喪儀節要』, 「禮書箚記」(『定本』 제22책, 151쪽). "悲哀踊疾, 自然拊心, 自然頓足, 此之謂'擗踊'. 其制之爲節者, 矯也. 蓋古之孝子擗踊過度, 故聖人爲之節制, 令不傷生."; 『祭禮考定 1: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2쪽). "○[鏞案] 人情無限, 禮制有防. 苟不防之, 將千歲矣.";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14쪽). "生日之祭, 在古無徵. 然揆之人情, 不能無饋也."; 『嘉禮酌儀: 「婚禮」』(『定本』 제22책, 250쪽). "○[按] 禮者, 節文也."; 『禮疑問答』, 「書牘禮問」(『定本』 제22책, 286쪽). "[答] 三寸·四寸, 果是東俗. 然且極妙至精, 當於情理, 不可以東俗而少之也."; 『禮疑問答』, 「書牘禮問」(『定本』 제22책, 287쪽). "[答] …… 古經, 凡爲人後者之降其本親, 非以貳本也. …… 後世立後, 旣是庶人者也, 旣是支子者也, 又無尊祖·敬宗之義, 而降其本親, 絶奇劬勞之恩, 甚傷天理."; 『禮疑問答』, 「君喪廢私祭論 2」(『定本』 제22책, 307쪽). "○[鏞案] …… 堂上·堂下官服斬衰三年·齊衰期者, 二祥自然過時, 天理也."

130) 『論語古今注 Ⅱ』(『定本』 제9책, 310쪽). "○[案] …… 孟子曰: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樂之實, 樂斯二者是也.' 禮·樂之本起於人倫, 玉帛·鐘鼓未足以爲禮·樂也."

131) 「五學論 1」(『定本』 제2책, 296쪽). "禮者, 所以節文乎孝·弟·忠·信之行者也."

132) 「『樂書孤存』序」(『定本』 제2책, 395쪽). "禮以節外, …… 節乃制行, …… "; 『陶山私淑錄』(『定本』 제4책, 318쪽). "禮者, 所以拘束筋骸, 禁其縱逸而生疾也."

가지기 때문에 ㉡ "예禮를 알지 못하면 시視·청聽·언言·동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몸도 바르게 세울 수 없게 된다.[133] ②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란 한 사회의 전반적인 문물제도를 조직·운용하는 질서감각을 제공하는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 "원래 거車·복服이라는 것도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賞을 주고 벼슬을 올려주어 이것을 통해서 존비尊卑와 귀천貴賤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당唐·우虞의 시대라 하더라도 많은 등급을 두지 않을 수 없었으"[134]며, ㉡ 또한 "옛사람들이 연향燕饗을 베풀

133) 『論語古今注 Ⅱ』(『定本』 제9책, 263쪽). "○[補曰] 禮, 所以定上下·別嫌疑. 不知禮, 則無以視·聽·言·動, 故不能植其身.【朱子云: '不知禮, 則耳目無所加, 手足無所指.'】"; 『中庸自箴』(『定本』 제6책, 271쪽). "[箴曰] …… ○…… 禮, 所以辨上下, 則其用亦不過正其倫而已."; 『喪禮四箋 Ⅲ』, 「喪期別 21」(『定本』 제20책, 449쪽). "○[鏞案] 如其倫者, 親有遠近, 爵有尊卑也.";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41쪽). "○[鏞案] 禮者, 所以別嫌疑·定親疏.";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44쪽). "○[鏞案] …… 禮也者, 所以別嫌疑而定親疏者也.";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46쪽). "○[鏞案] …… 別嫌疑·定親疏, 乃禮家之精義.";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48쪽). "○[鏞案] …… 使尊者尙輕, 卑者尙重; 本幹者尙輕, 旁支者尙重; 親者以疏, 疏者以親, 豈聖人制禮之義乎?";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2」(『定本』 제21책, 254쪽). "○[鏞案] …… 諸臣皆斬, 故親者不得不斬. 玆所謂'決嫌疑而定親疏'也.";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1쪽). "○[鏞案] …… 禮也者, 所以別上下而殊貴賤, 以納民於軌度者也."

134) 『論語古今注 Ⅱ』(『定本』 제9책, 194쪽). "○[案] …… 原夫車·服爲物, 所以賞功·進秩,【「虞書」云: '車·服以庸'】以別尊卑, 以表貴賤, 故雖在唐·虞之時, 不得不多其等級.";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1쪽). "○[鏞案] …… 禮也者, 所以別上下而殊貴賤, 以納民於軌度者也. 故'天子袞冕, 上公袞冕, 侯伯鷩冕, 孤卿希冕, 大夫玄冕', 【「司服」文】有敢踰者乎? …… 旗旂有數, 樊纓有差, 舞佾有等, 屋罳有度, 百體森整, 萬民以正."; 『喪禮四箋 Ⅰ』, 「喪儀匡 4」(『定本』 제18책, 144~146쪽). "○[鏞案] '孤某須'者, 諸侯之禮也. 士之子稱孤, 則司敗其赦之乎? …… 諸侯之稱孤而不稱君, 以有斯義也. …… 士之稱孤, 名義之所不敢也. …… 然名不可假借也."; 『喪禮四箋 Ⅰ』, 「喪儀匡 6」(『定本』 제18책, 180쪽). "○[鏞案] …… 聖人之禮嚴矣."; 『喪禮四箋 Ⅰ』, 「喪儀匡 9」(『定本』 제18책, 269쪽). "○[鏞案] 古者, 天子葬以隧, 諸侯以下葬以羨道, 庶人縣棺而封. 禮級森然, 不可相亂也."; 『喪禮四箋 Ⅱ』, 「喪具訂 5」(『定本』 제19책, 133쪽). "○[鏞案] 振容者, 君之物也. 揄紲者, 士之物也. 大夫上不僭君, 故不振容; 下不偪士, 故不揄紲也."; 『喪禮四箋 Ⅱ』, 「喪具訂 5」(『定本』 제19책, 136쪽). "○[鏞案] 今世庶人, 皆用黼翣·雲翣, 宜禁之."; 『喪禮四箋 Ⅲ』, 「喪期別 21」(『定本』 제20책, 449쪽). "○[鏞案] 如其倫者, 親有遠近, 爵有尊卑也."; 『喪禮外

고 제사祭祀를 지낼 때에 모두 (禮에 맞게: 필자 주) 품급品級을 두어, 매번 태뢰大牢·소뢰少牢·특생特牲·특돈特豚·일정一鼎·포해脯醢의 여섯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나물 하나 과일 하나도 마음대로 더하고 빼지 못하였으니, 선왕先王의 법제法制의 엄격하고 세밀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135]

셋째, 정약용은 이상과 같은 기능을 가진 예는 또한 한 사회 및 국가

編』, 「正體傳重辨 1」(『定本』 제21책, 226쪽). "○[又按] …… ○…… 若夫天子·諸侯之禮, 其尊嚴隆重, 又截然不同. …… 故古者制禮, 與大夫·士之禮, 特特自別.";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1」(『定本』 제21책, 232쪽). "[總義] 天子·諸侯之禮, 豈可以士禮折之乎?"; 『喪儀節要』, 「節要問答」(『定本』 제22책, 117쪽). "[答] …… 然后土之神, 唯天子·諸侯得祭之, 非匹夫之所敢爲也. …… 然山林之神, 亦唯國君祭之, 子將奈何?";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1쪽). "○[鏞案] …… 『書儀』者, 溫國公·司馬光之作. 彼固天子之上相得用上公之禮者也. 藩邦之士·庶人, 其敢倚是乎?"; 『祭禮考定 1: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9쪽). "○[鏞案] 『書儀』·『家禮』, 全擧四時之祭者, 天子之卿得用諸侯之禮也. 諸侯之大夫·士, 其敢爲是乎?"; 『祭禮考定 1: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3쪽). "○[鏞案] …… 山川之祭, 唯諸侯擧之, 必非尋常百姓所敢爲也. …… 若云: '大地之示', 則是又天子之所能祭, 尤所不敢也."

135) 「寄兩兒」(『定本』 제4책, 274쪽). "古人燕饗·祭祀, 皆有品級, 每於大牢·少牢·特牲·特豚·一鼎·脯醢六者之中, 揀而用之, 其一菜一果, 不敢任意增損, 先王法制之嚴且密, 如是也.";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92~193쪽). "祭饌之有五等, 猶喪服之有五等.【曰: '斬衰', 曰: '齊衰', 曰: '大功', 曰: '小功', 曰: '三月', 其不能月者, 袒免而已】 …… 饌於是五者乎無當者, 非禮之饌也. 今人第知有二牢·特牲之名, 而其籩·豆·簋·鉶之數, 尙多昧昧, 至於三鼎·一鼎之品, 竝其名而泯焉. 於是, 人自爲制, 紛淪潰裂, 踰分越法, 務尙華靡, 而先王節約之制, 與孝子哀敬之文, 掃地盡矣. 古者, 祭祀之禮, 原倣燕饗之儀. 生則燕饗以致歡, 死則祭祀以致敬, 其義一也, 而其隆殺之等, 一以其牲·鼎多少, 立制·立名. …… 鼎爲之統, 而籩·豆·簋·鉶之屬, 隨之爲豐約, 皆著之經禮, 秩然有別. 此先王之大典, 聖人之至訓, 千世之所宜遵. 凡有祭奠, 宜於是五者之中, 揀而用之, 不宜率情徇物, 有所增損也.";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93쪽). "○[按] …… 古禮雖殘缺, 考之三禮, 其庶品之數, 至今磊落, 秩然有別.";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1쪽). "○[鏞案] …… 顧獨於祭祀·燕饗之節, 漫然無級哉! 太牢·少牢者, 君·大夫之所用也. 特牲·豚·魚者, 士·庶人之所安也. 一有踰越, 遂陷大戾. 故古者大夫聘於鄰國, 其籩·豆·酒醴之數, 一或差濫, 則恐懼逡巡, 不敢寧受."; 『嘉禮酌儀: 「婚禮」』(『定本』 제22책, 250쪽). "○[按] 禮者, 節文也. 太牢·少牢·特豕·特豚三鼎·一鼎, 其節級森然."

의 '통서統緖를 엄격히 하고 화란禍亂을 방지하는 핵심적 수단'[136]으로서, 이에 그 결과적 공용功用은 곧 '안상치민安上治民'과 '이풍역속移風易俗'으로 나타나게 된다[137]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예를 구현하고 있는 선왕의 법제가 이처럼 엄격하고 세밀하여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만고불변의 것은 아님 또한 역설한 바 있다. 즉, 그는 예의 근거와 유래를 기본적으로 '인정人情(에 화협和協하는 바)'에 두었기 때문에 만약 인정人情이 바뀌고 세도世道가 변하게 되면 예 또한 이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인식·강조했던 것이다.[138]

---

136)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3」(『定本』 제21책, 263쪽). "〇[鏞案] 論聖人制禮之本義, 則或以之嚴其統緖, 或以之防其禍亂."

137) 『論語古今注 Ⅰ』(『定本』 제8책, 97쪽). "[補曰] …… 仁爲之本, 而禮·樂由之以生.【「儒行」云: '禮節者, 仁之貌也; 歌樂者, 仁之和也.'】 不仁則其本亡矣,【孟子以孝·弟爲仁·義, 曰: '禮之實, 節文斯二者; 樂之實, 樂斯二者.'】 奈此禮·樂何?"; 『論語古今注 Ⅰ』(『定本』 제8책, 97쪽). "〇[案] 仁者, 忠·孝之成名. 禮, 自履此而生; 樂, 自樂此而生, 仁爲之質, 而禮·樂爲之文也.【曾子曰: '仁者, 仁此者也; 禮者, 履此者也. 樂自順此生, 刑自反此作.'】"; 『論語古今注 Ⅱ』(『定本』 제9책, 310쪽). "〇[案] 『孝經』云: '移風易俗, 莫善於樂. 安上治民, 莫善於禮.' 馬·鄭取之以解此章. 然安上治民·移風易俗, 皆禮之功用. 豈禮·樂之本哉? 禮·樂本於孝·悌·忠·信, 故子曰: '人而不仁, 如禮·樂何?'"

138) 「『邦禮艸本』序」(『定本』 제2책, 401쪽). "夏后氏之禮, 非夏后氏之所獨制也. 卽堯·舜·禹·稷·契·益·皐陶之等, 所聚精會神, 竭誠單智, 爲萬世立法程者也. 其一條一例, 豈人之所能易哉? 然殷人代夏, 不能不有所損益; 周人代殷, 不能不有所損益. 何則? 世道如江河之推移, 一定而萬世不動, 非理之所能然也.";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2쪽). "雖考古之論, 每譏濫雜, 而因時制宜, 參古酌今, 庶不大悖於名義之定分也."; 『祭禮考定 1: 「祭儀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4쪽). "禮多不便, 古禮雖美, 無以悉遵也."; 『祭禮考定 1: 「祭儀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4쪽). "古禮太繁, 今禮太簡, 未易中也. 然且天子·諸侯之禮, 多相參錯, 習而不辨, 犯分多矣. 玆取「小牢」·「特牲」之禮及『朱文公家禮』, 參伍出入, 採錄如左.";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3쪽). "今燕器·燕饌, 皆與古殊, 而欲于祭器·祭饌, 一遵古制, 亦不通之論也. 君子行禮, 不求變俗, 但求古人制裁名分之本, 而謹守其意, 罔敢踰越焉, 則小德雖出入, 可也."

2) '가례'론에 나타난 '예의 정신'

정약용은 상기한 바와 같은 '예禮'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례家禮'론을 통해서 시대성에 구애되지 않는 일련의 보편적인 유교적 '예禮의 정신精神'을 나름대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그 대표적 내용을 그의 예학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은 자신의 '가례'론을 통해 고례古禮로부터 연원한 '유교적儒教的 인도주의人道主義'의 정신을 잘 계승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가례'론의 저변에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의 태도가 수미일관 관철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바, 이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그는 『가례작의嘉禮酌儀』의 「관례冠禮」편에서 특히 '관례'에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러한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성년成年이 된 남자에게 성인成人의 예禮를 책임지우면서, 거듭하여 "너의 어른스러운 뜻을 따라 행하여 장수하고 상서로우며 큰 복을 받"을 것, "너의 몸가짐을 공경히 하고 너의 덕을 삼가 오래도록 장수하며 큰 복을 길이 누"릴 것, "형제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을 것,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도록 잊지 말" 것 등을 축복하고 기원했던 사실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② 또한 그는 『제례고정祭禮考定』의 「제찬고祭饌考」편에서 '제례祭禮'가 함축하고 있는 예학적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옛날의 제사祭祀 지내는 예는 원래 연향燕饗의 의식을 모방한 것이다. 살아계실 때는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지극히 하였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 공경을 지극히 하였으니, 그 뜻은 같은 것"이라거나 "옛날에는 연향

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곧 제사에서 사용하는 그릇이었고, 연향에서 먹는 음식이 곧 제사에서 올리는 음식이었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여 그 예禮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통하여 또한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인도주의'의 정신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정약용은 자신의 '가례'론을 통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儒敎的 합리주의合理主義'의 정신을 강조·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① 그는 『상의절요喪儀節要』에서 상장례喪葬禮의 거행과 관련하여 "모두 풍수風水와 관련된 사설邪說을 살피지 않고, 음양陰陽에 따라 풍속에서 꺼리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② 또한 『풍수집의風水集議』를 편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도 "풍수설風水說은 세상에서 흔히 신봉하는 바 되어 덕의德義는 닦지 않고 장무葬巫에게 복福을 구하는데, 이러한 습속이 이미 고질화되어 그 미혹됨을 깨우칠 수가 없게 되었다. …… 선善을 좋아하고 사리事理에 밝은 자가 이 책을 접하여 풍수의 망령됨을 깨닫고 이로 인해 그 폐단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피력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성행하던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비롯된 산송山訟의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유교적 장례葬禮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③ 나아가 『제례고정』의 「제기고祭期考」편에서도 "삼원절三元節은 불교佛敎에서 나온 것으로, …… 모두 조상에게 제사하는 뜻이 없"으며, "사중일四重日에 관한 설도 …… 모두 궁중의 비빈妃嬪의 처소에서 행한 무속巫俗에서 나온 것으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날로 삼기에는 마땅하지 않다."[139]라

139) 『祭禮考定 1: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3쪽). "三元之節, 出於釋氏, …… 皆無祭先之義. 四重之說, …… 皆出宮掖間巫禱之風, 不宜祭先."

고 하여 세속의 잘못된 풍속을 비판·거부한 바 있다.

셋째, 정약용은 자신의 '가례'론을 통해 '예의 근본 중시'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곧 '고례古禮의 정신精神'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는데, 이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그는 가례의 제정 및 입론과 관련하여 일찍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옛 서적을 널리 상고하여 경經은 경經을 통해서만 고증함으로써 성인聖人의 본지本旨를 얻기를 기약하였다."[140]라고 회고했던바, 이로써 그는 ㉠ 무엇보다 '성인의 본지'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특히 '경經은 경經을 통해서만 고증하는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② 이러한 그의 입장과 방법은 또한 "무릇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음식이나 공적인 연회燕會에서의 음식은 모두 고례를 상고하여 바로잡음이 마땅합니다."[141]라거나 "입후立後에 관한 일은 고례의 뜻에 비추어보면 학초學樵[정약용의 조카: 필자 주]의 경우에는 예법禮法 상 후사後嗣가 없어야 합니다."[142]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잘 간취할 수 있듯이, 가례의 시행에 있어 성인의 본지로서의 '고례의 정신'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원칙으로 이어진 바 있다. ③ 이처럼 '고례의 정신'을 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은 나아가 "(예의: 필자 주) 대강령大綱領이 이미 올바르다면 작은 절목節目이야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된다."[143]라거나 『제례고정』의 「제찬고」편에서 "군자君子가 예를 행함에 시속時俗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만 고인古人이 제재制裁한 명분名分의 근본을 구하여 삼가 그 뜻을 지켜 감히 넘어서지 않는다면, 비

140) 「『喪禮四箋』序」(『定本』 제2책, 394쪽). "其有不當於心者, 博考古籍, 以經證經, 期得聖人之旨."

141) 「答仲氏」(『定本』 제4책, 196쪽). "凡勅使之饗, 公燕之饌, 宜皆考古釐正."

142)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立後事, 律之以古義, 樵也, 法當無後."

143) 「答仲氏」(『定本』 제4책, 202쪽). "大綱旣正, 則小節出入可也."

록 소소한 덕德은 출입出入이 있더라고 괜찮다."[144]라고 말한 데서 간취할 수 있듯이, 가례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 어디까지나 '예의 대강령'이나 '예의 대의大義' 및 '고인이 제재한 명분의 근본'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원칙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넷째, 정약용은 상기한바 '고례의 정신'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또한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의 절충折衷'이라는 정신을 일관되게 천명·실천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가례의 제정 및 입론과 관련하여 『제례고정』의 「제의고祭儀考」편에서 "고례는 지나치게 번다하고 금례今禮는 지나치게 간소하여 중도中道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마땅히 고금古今의 예禮를 참작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변화된 것은 제쳐둔다면 대의大義를 잃지 않을 것이다."[145]라거나 「제법고祭法考」편에서 "비록 고례의 논의를 상고하더라도 매번 넘치고 난잡함을 원망하니, 시대에 맞게 적절한 제도를 만들되[因時制宜] 고금古今의 예를 참작한다[參古酌今]면 명칭[名]과 의리[義]에 따라 정해진 분수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146]라고 주장함으로써 항상 '고례의 원칙'과 '시속의 현실'을 동시에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절충하는 실용적 태도[147]를 강조한 바 있으며, ②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자

144)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3쪽). "君子行禮, 不求變俗, 但求古人制裁名分之本, 而謹守其意, 罔敢踰越焉, 則小德雖出入, 可也."

145) 『祭禮考定 1: 「祭儀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4쪽). "[今宜參古酌今, 遵其可行, 闕其所變, 不失其大義也.] 古禮太繁, 今禮太簡, 未易中也."

146)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2쪽). "雖考古之論, 每譏濫雜, 而因時制宜, 參古酌今, 庶不大悖於名義之定分也."

147) 정약용의 이러한 태도는 이익李瀷의 『예식禮式』을 비판한 데서도 잘 확인된다. "다만 『예식』은 지나치게 간소하게 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풍속에도 위배되고 고례에도 근거할 수 없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但『禮式』不但失之太儉, 其違於今俗, 而無據於古禮者, 不可勝數.)"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01~207쪽).

신의 독자적인 예학적 관점에 따라 고례古禮, 예서禮書, 제가諸家의 주석註釋, 법전法典[『經國大典』], 시속時俗, 인정人情 및 번繁·간簡 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③ 이러한 그의 태도는 또한 "지금의 사세事勢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고경古經만을 굳게 지키다가 화기和氣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거나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양자법養子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法이 이와 같으니, 이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148]라는 진술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 자칫 현실을 무시한 가례의 무리한 시행이 초래할 불화를 경계하는 한편,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풍속과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가례의 제정 및 입론에 있어 특히 '변등辨等'을 지향하는 '예의 기능'을 중시한 바 있다. 즉 ① 그는 「제찬고」편에서 "예란 것은 상하上下를 구분하고 귀천貴賤을 다르게 함으로써 백성을 법도法度 안에로 들여 넣는 것"[149]으로 규정했던바, ② 이에 그는 예제에서의 '한계[防]'와 '등급[等]'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참월僭越[踰]'을 경계한 바 있으며, ③ 나아가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예제의 구성에 있어 특히 '혈연적 지위', '사회적 신분과 지위[卿大夫·士]', '빈부貧富' 및 '연령年齡' 등에서의 차이를 표시·반영함에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준 바 있다. ④ 한편, 그는 당시 조선에서의 사족의 예제를 정립함과 관련하여 ㉠ 「제법고」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만들 때 대부大夫의 제사라 하더라도 삼대三代까지만 그치게 한 것은 제후국諸侯國이기 때문

148) 「上仲氏【辛未冬】」(『定本』 제4책, 212쪽). "○雖然, 今之事勢, 已至無可奈何, 不可膠守古經, 以傷和氣. 國俗有養子之法, …… 國法如此, 此國之民, 遵之何罪?"

149) 『祭禮考定 2: 「祭饌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201쪽). "○[鏞案] …… 禮也者, 所以別上下而殊貴賤, 以納民於軌度者也."

이다."[150]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예제적 준거점으로서 '제후국의 위상'을 강조하는 한편, ㉡ 「제의고」편에서는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禮는 서로 뒤섞인 것이 많아 익혀서 분변分辨하지 않으면 분수分數를 범하는 일이 많다."[151]라고 경계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사족이 흔히 '제후국의 신하'라는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가례의 시행에 있어서도 특히 존비와 귀천을 구별하는 예의 기본정신을 그르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152]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① 정약용의 '가례'론의 주요내용으로서 그의 '사례[관례, 혼례, 상례, 제례]'론, '입후'론 및 '거가사본[제가, 치가, 기가, 보가]'론을 차례대로 일별·소개하는 한편, ② 여기에서 전

150) 『祭禮考定 1: 「祭法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70쪽). "[故我國立制, 雖大夫之祭, 止於三代, 以侯邦也.] …… ○[鏞案] 我邦禮制, 多遵溫公『書儀』·朱子『家禮』·丘氏『儀節』. 然是三賢皆天子之臣也. 或身爲上卿, 或追封國公, 其位秩皆古諸侯也, 故其著之禮, 而傳之家自, 多用侯禮. 我邦之人, 忘其本分, 動欲摸擬, 則犯于僭者多矣, 宜謹守『國典』."; 『祭禮考定 一: 「祭期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二, 179쪽). "○[鏞案] 『書儀』·『家禮』全擧四時之祭者, 天子之卿得用諸侯之禮也. 諸侯之大夫·士, 其敢爲是乎?"

151) 『祭禮考定 1: 「祭儀考」』(『定本』 제22책, 『喪儀節要』, 卷2, 184쪽). "然且天子·諸侯之禮, 多相參錯, 習而不辨, 犯分多矣."

152) 정약용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상등上等의 태뢰太牢는 오직 천자天子가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와 천자가 초하룻날 먹는 음식 및 제후諸侯가 왕인王人을 대접하는 음식에서나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 감사監司가 하루에 세 번 받는 음식이 천자가 초하룻날 먹는 음식에 비교해 보자면 세 갑절이나 더 많으니, 분수分數를 범하고 법法을 업신여기며 조물주가 만든 생물을 함부로 죽임에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上等太牢者, 惟天子宗廟之祭, 及天子朔月之食, 及諸侯之饗王人, 用之. 今監司一日三受之饗, 乃視天子朔月之食, 加增三倍, 犯分蔑法, 暴殄天物, 莫此若也.)" 「答仲氏」(『定本』 제4책, 196쪽).

제·표명되고 있는 그의 '가례'론의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독자적인 '예'의 개념과 아울러 시대성에 구애되지 않는 일련의 보편적인 유교적 '예의 정신'을 추적·정리해보았다.

한편, 정약용이 이처럼 구상·제출했던 일련의 '가례'론은 또한 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사회가 목하 경험하고 있었던 심대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그의 예학적 문제의식의 직접적 산물이었음은 물론이다. ① 특히 17세기 후반 이래로 농업부문에서 토지개간과 영농법의 개선—이앙법移秧法과 이모작二毛作의 실시가 대표적이다—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농업생산성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질적 요소들, 특히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이라는 중상주의의 흐름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점차 확산·성장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농민층의 계층분화, 명분론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신분제도의 해체 및 중서층中庶層의 성장이라는 일련의 새로운 현상으로 연결된 바 있다. ㉠ 여기서 특히 전통적 사회신분제도의 해체라는 현상은 당시 '양반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하층양반의 비대화'를 야기함으로써 기존 양반층의 내부적 계층분화 역시 촉진·고착시켜 나갔고, 이는 동시에 당시 유행했던 '서울지역[京]을 높이고 지방[鄕]을 천시하는 풍조[貴京賤鄕之風]'와 더불어 '경향분기京鄕分岐'라는 새로운 현상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전통적 양반층도 계층적·학문적으로 서울지역의 이른바 '경화사족층京華士族層'과 지방의 '향유층鄕儒層'으로 확연히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자, 즉 지방의 향유층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사회적 처지가 계속하여 열악해짐에 따라 종국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농업·공업·상업에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타향으로 나가 자기보

다 신분이 낮은 상민常民 밑에서 고용살이[雇居]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신분적 우월성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이러한 빈한양반층貧寒兩班層은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나 이서층吏胥層으로부터 여러 가지 침학이나 핍박을 당하는 일이 만연되어 갔으며, 심지어는 피침被侵되어 군역軍役을 지게 되는 경우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53] ② 결국, 정약용이 구상·제출했던바 상기의 '가례'론은, 특히 그가 '거가사본'론에서 그 대상으로 "가난한 사족士族"이나"작록爵祿의 계통을 잃은 사대부가士大夫家"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서 간취할 수 있듯이, 당시 당색黨色을 막론하고 몰락해가던 대다수의 하층양반의 경제·사회적 위상을 회복·보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치기반의 확보와 강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예학적·정치적 기획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한다.[154]

---

15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일균(2012a: 282~329)과 정일균(2022: 84~85, 133~134)이 참조된다.

154) 이러한 사실은 정약용의 다음과 같은 거듭된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근세近世 이래로 작록爵祿이 한쪽으로 치우쳐 귀족貴族이 쇠잔하게 되자 호리豪吏·호맹豪甿이 이를 틈타 기세를 부려 이들의 집과 말치장의 호사스러움 및 의복과 음식의 사치스러움이 모두 법도法度를 넘어서게 되었다. 아래가 위를 능멸하고 위는 시들게 되어 다시는 등급等級이 없게 되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사회를 유지·결속하여 원기元氣를 북돋우고 혈맥血脈을 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변등辨等은 오늘날의 급무이다.(近世以來, 爵祿偏枯, 貴族衰替, 而豪吏·豪甿, 乘時使氣, 其屋宇·鞍馬之侈, 衣服·飮食之奢, 咸踰軌度. 下陵上替, 無復等級, 將何以維持聯絡, 以之扶元氣而通血脈乎? 辨等者, 今日之急務也.)" 『牧民心書 Ⅱ』, 「禮典六條」(『定本』 제28책, 272쪽).; "무릇 변등辨等의 정사는 오직 소민小民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이 상층을 범하는 것도 역시 미워해야 할 것이다.(凡辨等之政, 不唯小民是懲, 中之犯上, 亦可惡也)" 『牧民心書 Ⅱ』, 「禮典六條」(『定本』 제28책, 274쪽); "옹정雍正 신해년[1731년, 英祖 7: 필자 주] 이후로 …… 상층上層은 약해지고 하층下層은 강해져서 기강紀綱은 무너지고 백성의 뜻은 흩어져서 통령統領할 수 없게 되었다. …… 국가가 의지하는 바는 사족士族인데, 이 사족이 권세를 잃은 것이 이와 같다. …… 오늘날 시골의 토족土族은 이미 모두 튼실해지고 고가故家의 후예들은 모양

(논문투고일 2025년 2월 27일, 심사확정일 2025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령으로 온 사람들이 백 년 전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잘못 듣고서 오히려 귀족貴族이 호강豪强하다고 하면서 송사訟事를 다룰 때마다 우선 억강부약抑强扶弱하기로 작심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雍正辛亥以後, …… 上弱下强, 紀綱陵夷, 民志以散, 不相統領. …… 國家所倚者士族, 而其無權失勢如此. …… 今遐鄕土頑, 槩多饒實, 而故家遺裔, 不成模樣. 乃守令來者, 謬聞百年以前流傳之言, 猶謂貴族豪强, 每遇相訟, 先以抑强爲心, 此大誤也.)" 『牧民心書 Ⅱ』, 「禮典六條」(『定本』 제28책, 278쪽).

참고문헌

원전

『定本 與猶堂全書 2』

『定本 與猶堂全書 3』

『定本 與猶堂全書 4』

『定本 與猶堂全書 6』

『定本 與猶堂全書 8』

『定本 與猶堂全書 9』

『定本 與猶堂全書 11』

『定本 與猶堂全書 18』

『定本 與猶堂全書 19』

『定本 與猶堂全書 20』

『定本 與猶堂全書 21』

『定本 與猶堂全書 22』

『定本 與猶堂全書 28』

『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정약용 지음/ 전성건 옮김,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사람의무늬, 2015)

『다산 정약용의 풍수집의』(정약용 지음/ 박종천 옮김,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사람의무늬, 2015)

「幽居論」(강진군 소장자료)

『儀禮』

『국역 의례: 관례·혼례편』(이상아·박상금·최진 엮음, 성백효 감수,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21)
『국역 의례: 상례편』(이상아·박상금·최진 엮음, 성백효 감수,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5)
『국역 의례: 제례편』(이상아·박상금·최진 엮음, 성백효 감수,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21)
『朱子家禮』
『주자가례』(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1999)

논문과 단행본

박미해, 「다산 정약용의 가(家)와 가(家)의식: 『거가사본(居家四本)』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 사』 103, 2014.
———, 「다산 정약용의 『거가사본(居家四本)』과 가족윤리」, 『다산과 현대』 13, 2020.
박종천, 「『사례가식』 해제」, 다산학술문화재단, 『定本 與猶堂全書 22』, 도서출판 사암, 2012.
———, 「해제(解題)」, 정약용 지음, 박종천 옮김,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다산 정약용의 풍수집의』, 사람의무늬, 2015.
李霜芽, 『茶山 丁若鏞의 『祭禮考定』 譯註』,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4.
전성건, 「해제(解題)」, 정약용 지음, 전성건 옮김,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 사람의무늬, 2015.
정 민, 『다산의 재발견』, Humanist, 2011.
鄭一均, 「『朱子家禮』와 '禮의 精神'」, 『韓國學報』 104, 2001.
———, 『다산 사서경학 연구 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a.

———, 『다산 사서경학 연구 ❷』,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b.
———,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3, 2022.
조성을, 「『여유당집』 예학관련 저작의 재구성과 연대고증: 「자찬묘지명」체제에 의거한 『상례사전』『상례외편』『사례가식』『전례고』의 복원」, 『서지학보』 29, 2005.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정약용의 '가례家禮'론의 주요내용으로서 그의 '사례四禮[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론, '입후立後'론 및 '거가사본居家四本[제가齊家, 치가治家, 기가起家, 보가保家]'론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한편, 여기에 전제·표명되고 있는 그의 '예禮'의 개념과 '예禮의 정신精神'을 추적·정리해본 글이다. 즉, 그가 제시한바 ① '사례'론에서는 대표적인 유교적 통과의례通過儀禮로서의 '관례', '혼례', '상례' 및 '제례'의 의식절차와 예학적 문제의식, ② '입후'론에서는 그 구성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 ③ '거가사본'론에서는 '제가', '치가', '기가' 및 '보가'를 위한 핵심적 실천방안과 그 내용적 특징, ④ 그의 '가례'론 일반의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예'의 개념 및 이러한 '가례'론을 통해 구체화된 시대성에 구애되지 않는 일련의 보편적인 유교적 '예의 정신', 즉 '유교적 인도주의人道主義', '유교적 합리주의合理主義', '예의 근본 중시',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의 절충' 및 '변등辨等을 지향하는 예의 기능의 중시'라는 예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를 차례대로 추출·개관해보았다.

한편, 정약용이 이처럼 구상·제출했던바 일련의 '가례'론은 또한 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사회가 목하 경험하고 있었던 심대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그의 예학적 문제의식의 직접적 산물이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정약용이 구상·제출했던 상기의 '가례'론은, 특히 그가 '거가사본'론에서 그 주요대상으로 "가난한 사족士族"이나"작록爵祿의 계통을 잃은 사대부가士大夫

家"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서 간취할 수 있듯이, 당시 당색黨色을 막론하고 몰락해가던 대다수의 하층양반의 경제사회적 위상을 회복·보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치기반의 확보와 강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예학적·정치적 기획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한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가례'론, '사례[관례, 혼례, 상례, 제례]'론, '입후'론, '거가사본[제가, 치가, 기가, 보가]'론, 예의 정신.

Abstract

A Study of Tasan Jeong Yak-yong's Theory of Family Rituals

Jeong Il-gy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Jeong Yak-yong's theory of 'four rites(Rites of capping, Rites of marriage, Rites of funeral, Rites of sacrifices)', that of 'adoption principles' and that of 'four general principles for family life(The establishment of ethical order in family, The management of family finances, The raise of family status, The preservation of family)' one by one as the main contents of his theory of 'family rituals' and pursues and arranges his concept of 'rites' and 'the spirits of rites' which were set forth as a premise and were expressed in his theory of 'family ritual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In relation to Jeong Yak-yong's theory of 'four rites', the ceremonial proceedings of and his ritual concerns and interests in 'Rites of capping', 'Rites of marriage', 'Rites of funeral' and 'Rites of sacrifices' as a representative Confucian rites of passage are examined in order. ② In connection with his theory of

'adoption principles', its constituent substances and its concrete case of application are considered. ③ In reference to his theory of 'four general principles for family life', the core practical methods and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order in family', 'The management of family finances', 'The raise of family status' and 'The preservation of family' are introduced by turns. ④ His concept of 'rites' which was philosophical basis of his theory of 'family rituals' in general and his universal and not irrespective of the phases of the times Confucian 'spirits of rites' which were embodied in his theory of 'family rituals' are extracted and surveyed.

On the other hand,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a series of theories of 'family rituals' which Jeong Yak-yong mapped out and presented were a response to a chain of enormous socio-economic changes which Joseon(朝鮮) society experienc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y and a direct product of his critical mind on the ritual situations of the then Joseon society. After all, Jeong Yak-yong's a series of theories of 'family rituals' were probably a part of his ritual and political programs which aimed at ensuring and strengthening national ruling base with attaching importance to royal authority by means of restoring and preserving socio-economic positions of the then large majority of lower nobility who were going to ruin regardless of the Four Factions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Tasan, Jeong Yak-yong, The Theory of 'Family Rituals', The Theory of 'Four Rites(Rites of Capping, Rites of Marriage, Rites of Funeral, Rites of Sacrifices)', The Theory of 'Adoption Principles', The Theory of 'Four General Principles for Family Life(The Establishment of Ethical Order in Family, The Management of Family Finances, The Raise of Family Status, The Preservation of Family)', The Spirits of Rites.